뉴욕 주 검찰총장 사무소 레티샤 제임스 (Letitia James)

# 뉴욕의 언어 접근

# 목차


이 안내서의 이용 방법 .....5

통역 및 번역 서비스 접근 .....6

의료 언어 접근 .....11

교육 언어 접근 .....13

법집행 언어 접근 .....18

투표 언어 접근 .....21

뉴욕주 보호 마련 .....23

연방 명령 및 정책 .....28

민원 .....32

참조 자료 .....38

본 문서의 ASL 동영상은 다음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

ag.ny.gov/language-access

영어가 서투른 사람(LEP), 청각장애인 또는 난청인의 경우, 뉴욕에서 중요한 프로그램, 활동 및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와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를 "**언어 접근(language access)**"이라고 합니다.

언어 접근은 여러분을 포함한 우리 주의 모든 사람이 사회에 온전히 참여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 보장을 위해 필요합니다. 언어 접근은 여러분이 의료 서비스, 자녀 교육, 거주지 선택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줍니다. 또한 응급 상황에서의 도움 요청, 법원 출석, 운전면허 갱신 등 필수적인 정부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LEP, 청각장애인 또는 난청인은 일부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무료 의사소통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본인의 주 사용 언어로 제공되는 구두 통역
- 뉴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언어들로 제공되는 서면 번역
- 미국 수어(ASL) 통역

이러한 권리는 주 법률 및 연방법에 의해 보호되며, 대통령 행정명령이나 정책으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뉴욕주 법무장관실(OAG)**은 이러한 권리를 수호하고, 여러분이 주법 및 연방법에 따른 언어 접근 권리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 이 안내서의 이용 방법

본 안내서는 다음을 포함하여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뉴욕에서의 통역 및 번역 서비스에 대한 여러분의 권리
- 의료 서비스, 학교와의 상호 작용, 법집행기관을 상대할 때, 투표할 때 여러분의 언어 접근 권리
- 주 법률 및 연방법이 이러한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
- 언어 접근 서비스를 받지 못한 경우 민원을 제기하는 방법

**법률 전문가** 및 기타 옹호자(advocates)를 위하여, **본 안내서의 미주**에 관련 법령과 판례에 대한 참고 자료를 제공합니다.

참고: 본 안내는 2026년 1월 기준입니다. 본 문서에 인용된 연방 규정은 해당 시점 기준으로 유효하나,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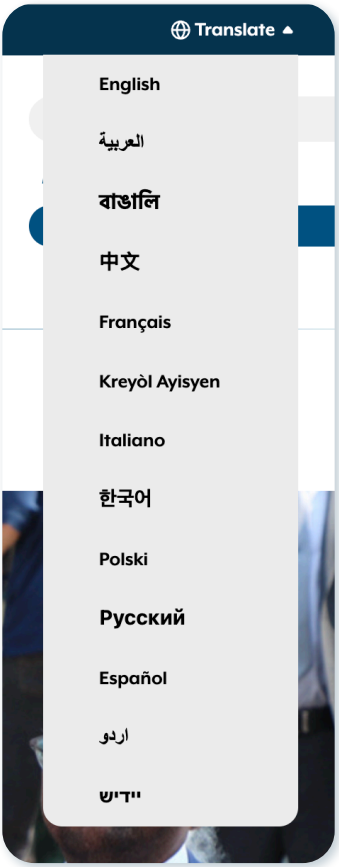

# 통역 및 번역 서비스 접근

## 뉴욕에서의 구두 및 미국 수어 통역 서비스

무료 구두 통역 또는 미국 수어(ASL) 통역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한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가장 보편적인 상황들 가운데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 의료 서비스

- 병원이나 응급실에서 환자로 진료를 받을 때,처방전을 받기 위해 약국을 방문할 때.[1]

### 공공 서비스

- 뉴욕주 차량국(DMV)[2], 산재보상위원회(Workers' Compensation Board), 세무국(Department of Taxation and Finance)[3]과 같은 주정부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나 급여를 받으려 할 때.
- 지방의 언어 접근 법이나 행정명령이 있는 시 또는 카운티의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나 급여를 받으려 할 때. 여기에는 뉴욕시와 웨스트체스터, 서퍽, 나소 카운티가 포함됩니다.[4]
- 대규모 재난이나 비상사태 이후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으려 할 때.[5]
-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때.[6]
- 보충 영양 지원 프로그램(Supplemental Nutrition Assistance Program, SNAP) 급여를 신청할 때.[7]
-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청(New York State Office of Temporary and Disability Assistance) 및 지방 사회복지구(social service districts)를 통해 긴급 지원(Emergency Assistance) 및 기타 형태의 임시 지원(Temporary Assistance)을 신청할 때. 이러한 지원에는 현금 지원과 임시 주거, 보호시설, 공공요금에 대한 지급이 포함됩니다.[8]

## 법원 절차

- 주 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 또는 민사 재판에서 당사자(예: 원고, 피고, 신청인, 피신청인) 또는 증인으로 참여할 때.[9]
- 가정법원 절차의 대상이 되는 아동의 부모 또는 보호자일 때.[10]
- 연방 법원에서 진행되는 민사 또는 형사 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증인으로 참여할 때.[11]
- 이민 법원 절차에서 당사자일 때.[12]
- 청각장애인 또는 난청인이 분쟁 해결을 위해 주정부 기관이 주관하는 절차에서 당사자 또는 증인으로 참여할 때.[13] 이러한 절차는 급여나 면허 신청 거부, 법 위반에 대한 제재를 포함하여 다양한 분쟁을 해결합니다.

## 법집행

- 뉴욕주 경찰(New York State Police) 직원과 전화 통화를 하거나 사전에 예정된 약속을 진행할 때.[14] 주경찰(State troopers)은 현장 또는 경찰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황에서도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15] 긴급 상황 또는 범죄자 체포와 같이 시간이 본질인 경우는 예외입니다.[16]
- 뉴욕시 경찰국(NYPD) 소속 경찰관이 여러분의 신체, 차량, 가구, 또는 재산에 대한 수색에 대해 여러분의 인지된 동의를 필요로 하여 요청할 때. 이는 경찰관에게 수색 영장이나 상당한 근거가 없고 여러분이 체포 상태가 아닌 경우 발생할 수 있습니다.[17]
- 주 가석방위원회(state parole board)의 면담 또는 심문에 출석할 때.[18]

## 투표

- 투표를 하는 과정에 도움이 필요한 경우.[19]

**의료 서비스, 학교, 법집행, 투표**를 다루는 섹션에서는 여러분이 특정 상황에서 갖는 언어 접근 권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 뉴욕에서의 서면 번역 서비스

일부 기관과 단체는 법에 따라 특정 언어로 문서를 무료로 서면 번역하여 제공해야 합니다. 처방 의약품 라벨이나 급여 및 임금에 관한 정보와 같은 일부 유형의 정보는 여러분의 주 사용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반면, 주 정부 기관에서 발행하는 문서나 투표 및 선거와 관련된 자료와 같은 다른 유형의 정보는, 주 또는 여러분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영어권 언어로만 제공됩니다. 구체적인 번역 요건에 대해서는 각주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서면 통역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가장 보편적인 상황들 가운데에는 다음이 있습니다.

### 의료 서비스

- 처방 의약품을 받기 위해 약국을 방문할 때.[20]
- 병원이나 응급실에서 환자로 진료를 받을 때 일부 경우.[21]

### 공공 서비스

- DMV[22], 산재보상위원회, 세무국과 같은 주정부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나 급여를 받으려 할 때.[23]
- 뉴욕시, 웨스트체스터, 서퍽, 나소 카운티 등 지방 언어 접근법이나 행정명령이 있는 시 또는 카운티 기관으로부터 서비스나 급여를 받으려 할 때.[24]
- 노숙 상태이거나 보호소에 거주하면서 뉴욕시 노숙자 서비스국 (Department of Homeless Services)과 접촉하는 경우.[25]
- 메디케어 또는 메디케이드를 신청할 때.[26]
- SNAP 급여를 신청할 때.27

### 투표

- 투표 시 서면 자료를 읽는 데 도움이 필요할 때.[28]

### 고용

- 새로운 고용주로부터 급여 또는 임금에 관한 정보를 받을 때, 또는 산재보상위원회에 산재보상 급여에 관한 정보를 요청할 때.[29]

**의료 서비스, 학교, 법집행, 투표**를 다루는 섹션에서는 여러분이 특정 상황에서 갖는 언어 접근 권리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뉴욕주 기관

**뉴욕주 언어 접근법** (https://ogs.ny.gov/new-york-state-language-access-law)은 대중에게 서비스나 급여를 제공하는 주정부 기관에 적용됩니다.[30] 현재 DMV, 세무국, 인권국(Division of Human Rights), 산재보상위원회를 포함한 50개 주정부 기관은 언어 접근법에 따라 주요 문서의 번역과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31] **주요 문서**란 "기관의 서비스나 급여를 받는 데 필수적인 정보를 포함하거나, 법에 따라 작성이 요구되는 모든 종이 또는 전자 문서"를 의미합니다.[32] 이러한 언어 접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기관의 전체 목록은 **일반 서비스국의 뉴욕주 언어 접근 디렉토리**(Office of General Services' New York State Language Access Directory) (https://ogs.ny.gov/language-access-directory)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33]

언어 접근법에 따라, 이들 기관은 인구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LEP 뉴욕 주민이 사용하는 **비영어권 언어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12개 언어**로 주요 문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2025년을 기준으로, 해당 언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아라비아어**
- **벵골어**
- **중국어**
- **프랑스어**
- **아이티-크레올어**
- **이탈리아어**
- **한국어**
- **폴란드어**
- **러시아어**
- **스페인어**
- **우르두어**
- **이디시어** [34]

기관의 서비스나 급여를 이용하는데 여러분의 주 사용 언어가 위 12개 언어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라도, 이들 기관은 여러분의 주 사용 언어로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35]

뉴욕주 언어 접근법은 연방, 카운티, 시 기관에 적용되지 않지만, 연방 및 주 차별금지법은 카운티 및 시 기관과 접촉하는 경우에도 여러분의 언어 접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뉴욕의 일부 카운티와 시는 언어 접근법을 채택하거나 자체적인 언어 접근법 및 행정명령을 제정하였습니다.

**뉴욕시** 법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부 기관이 최소 100개 언어로 전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36] 추가적으로, 이 기관들은 가장 빈번하게 배포하는 문서를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벵골어, 아이티-크레올어, 한국어, 아랍어, 우르두어, 프랑스어, 폴란드어로 번역해야 합니다.[37]

**웨스트체스터 카운티**,[38] **서퍽 카운티**,[39], **나소 카운티**,[40] **몬로 카운티**[41]는 대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에 대해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요구하는 자체 법률, 행정명령 또는 언어 접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료 언어 접근

LEP, 청각장애인 또는 난청인의 경우, 뉴욕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거나 대부분의 약국을 이용할 때 언어 접근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는 주 법률 및 연방법과 관련 규정에 의해 보호됩니다.

**병원에서의 언어 접근**뉴욕주 내 모든 종합병원[42]은 LEP,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이 입원, 외래 또는 응급 서비스를 받는 경우 숙련된 통역인을 제공해야 합니다.[43] 종합병원은 이러한 언어 접근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환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특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치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안받았음에도 이를 거부하고 가족, 친구 또는 병원 직원이 아닌 사람을 통역인으로 사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인물에게 통역을 의존하도록 요구하지 않을 것[44]
- 최초로 진료를 받을 때 여러분의 선호 언어와 언어 관련 필요 사항을 확인할 것[45]
- 여러분의 언어 선호와 필요 사항, 그리고 언어 지원 서비스의 수락 또는 거부 여부를 의료 기록에 문서화할 것[46]
- 환자 및 잠재적 환자를 위해 무료 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방법을 설명하는 자료를 마련할 것[47]
- 무료 언어 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안내 표지를 공공장소에 게시할 것[48]
- 환자와 직접 접촉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언어 지원 서비스 제공의 중요성과 환자를 대신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법에 관한 지속적인 교육 및 훈련을 제공할 것[49]

입원 또는 외래 환경에서 진료를 받는 청각장애인 또는 난청인 환자의 경우, 병원은 일반적으로 요청으로부터 **20분 이내**에 숙련된 통역인을 제공해야 합니다.[50] 응급 서비스를 받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요청 후 **10분 이내**에 통역인을 제공해야 합니다.[51]

## 약국에서의 언어 접근

주법에 따라, 뉴욕 내에 동일한 소유주가 운영하는 8곳 이상의 약국 그룹에 속한 약국은 LEP 이용자가 언어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적절한 무료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52] 오프라인 약국과 우편 주문 약국은 처방 의약품에 관한 정보를 주거나, 여러분으로부터 환자 복약 기록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받을 때, 무료로 적절한 구두 통역 및 서면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53] 해당 약국은 또한 처방 의약품 라벨, 경고 라벨 및 기타 서면 자료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구두 통역 및 번역 서비스도 무료로 제공해야 합니다.[54]

## 의료 서비스에서의 차별금지 보호

차별금지법 역시 여러분이 의료 및 관련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언어 접근 권리를 보호합니다.

LEP, 청각장애인 또는 난청인의 경우, **부담적정보험법**(**Affordable Care Act**, ACA)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거나 연방 행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보건 프로그램 및 활동에서의 차별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합니다.[55] 이 보호는 메디케이드 및 메디케어와 같은 서비스뿐 아니라, 많은 병원, 클리닉, 요양 시설에도 적용됩니다. ACA 시행 규정에 따라, 이러한 보건 프로그램 및 활동은 또한 청각장애인과 난청인에게 무료 보조 기기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56] 또 다른 법인 **재활법**(**Rehabilitation Act**) 역시 연방 자금을 받는 의료 제공자가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에게 보조 기기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57]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은 모든 민간 및 공공 의료 시설과 의료 제공자에게 연방 자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유사한 의무를 부과합니다.[58]

**뉴욕주 인권법**(**New York State Human Rights Law**)은 뉴욕주 내 병원과 의료 클리닉이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 환자에게 보조 기기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59] **뉴욕시 인권법**(**New York City Human Rights Law**)도 뉴욕시 내 병원과 의료 클리닉에 대해 유사한 요건을 갖고 있습니다.[60]

# 교육 언어 접근

뉴욕의 공립학교는 영어 학습자(ELL),[61]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 학생의 학습 및 학교 활동 참여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부모가 LEP, 청각장애인 또는 난청인인 경우에도 자녀가 다니는 학교와 상호작용할 때 언어 접근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권리는 연방법과 주 법률에 의해 보호됩니다.

## 영어 학습자 학생을 위한 보호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공립학교는 ELL 학생의 학습 및 학교 자원으로부터의 수혜에 대해 동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합니다.

**연방법상 보호.** 연방 평등 교육 기회법(Equal Education Opportunity Act, EEOA)은 학군이 학생의 언어 장벽을 해소하기 위한 언어 지원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62] 학교는 ELL 학생을 위한 모든 대체 교육 프로그램이 해당 학군의 영어를 사용하는 학생이 누리는 것과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63] 이와 유사하게, 1964년 민권법(Civil Rights Act) Title VI은 학교가 출신 국가를 이유로 ELL 학생에게 열등한 교육을 제공하는 방식의 차별을 금지합니다.[64]

또 다른 연방법인 장애인 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IDEA)은 장애인 학생과 그 부모 또는 보호자를 위해 다음과 같은 언어 접근 보호를 제공합니다.

- 학군은 학생이 가장 편안하게 사용하는 언어로 제공되는 특수 서비스 및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65]
- IEP 팀은 학생이 받는 교육 프로그램에 학생의 언어 및 의사소통 필요를 고려해야 한다.[66]
- 장애인 학생을 위해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학교는,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장애인 학생의 평가 및 배치와 관련된 문서를 부모의 모국어로 번역해야 한다.[67]

**주법상 보호.** 뉴욕 법률과 규정은 ELL 학생을 위한 추가적인 보호를 제공합니다.

뉴욕주에서 학군은 모든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해 ELL 학생에게 동등한 접근을 제공해야 합니다.[68] 뉴욕주 헌법은 모든 아동에게 언어 장벽에 관계없이 건전하고 기본적인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69] 또한 여러 주 법률은 장애, 출신 국가, 인종 및 기타 보호 대상 신분을 근거로 하는 학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합니다.[70]

그 밖의 주 법률 및 규정은 학군이 **ELL 학생을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편의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71]

- 뉴욕주의 학군은 신입 학생 전원을 대상으로 ELL 학생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 선별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72] 학생의 가정에서 영어 외의 언어가 사용되는 경우, 해당 선별 검사는 학생의 모국어로 의사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실시해야 합니다.[73]
- ELL로 확인된 학생에 대해서는, 학군이 중요한 주 기준과 요건을 충족하는 이중 언어 또는 영어 신학습자(English as a New Language, 이전 명칭은 "영어 제2언어(English as a Second Language)" 또는 "ESL")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74]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26개 언어로 제공되는 뉴욕주 교육부의 뉴욕주 ELL 학부모 안내서(Guide for Parents of ELLs in New York State) (https://www.nysed.gov/bilingual-ed/guide-parents-english-language-learners-and-multilingual-learners-new-york-state)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차터 스쿨(Charter schools)**은 ELL 학생의 파악 및 평가에 관한 모든 연방 및 주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차터 스쿨은 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주 기준을 충족하는 이중언어 교육 또는 영어 신학습자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또는 "과학적 연구에 기반하고 차터 기관의 승인을 받은 대체 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75]

**뉴욕시 공립학교**의 ELL 학생은 추가적인 법적 보호를 받습니다. 동의판결 명령(consent decree)으로 알려진 법원의 집행 합의에 따라, 뉴욕시 공립학교 시스템은 ELL 학생을 파악하는 방법과 ELL 학생에게 적절한 이중언어 교육을 제공하는 언어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76]

##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 학생을 위한 보호

**연방법상 보호.** 장애인 교육법(IDEA)은 공립학교가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 K-12 학생에게 연령과 능력에 적합한 교육적 진전을 이룰 수 있게 하는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77]

미국 장애인법(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과 재활법(Rehabilitation Act)은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 학생에게 IDEA가 제공하는 것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78] 예를 들어, ADA는 학교가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 학생과의 의사소통이 정상 청력 학생과의 의사소통만큼 효과적이도록 보장하는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79] 또한 ADA는 학교가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 학생이 선호하는 보조 기기와 서비스 유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요구합니다.[80]

이러한 법률에 따라 학교가 제공해야 하는 편의는 각 학생의 개별적 필요에 맞추어 달라집니다. 여기에는 적절한 경우 언어 및 발화 치료,[81] 단어 대 단어 전사 서비스,[82] 수업 필기 자료, 우선 좌석 배치, 주파수 변조(FM) 시스템, 또는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 학생을 위해 특별히 훈련된 교사[83]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ADA의 보호는 공립 및 사립학교 모두에 적용됩니다.[84] 재활법의 보호는 공립학교와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사립학교에 적용됩니다.[85] ADA와 재활법은 모두 전문대학 및 종합대학에 적용됩니다.[86]

**주법상 보호.** 뉴욕주 법은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 학생에 대한 차별을 금지합니다.[87]

## 부모 및 보호자를 위한 보호

연방법과 주법에 따라, 학교는 LEP,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 부모가 자녀의 교육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언어 접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학교는 ELL 학생의 부모를 위해 특별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보호는 보호자, 입양 부모 및 학생에 대한 양육권을 가진 모든 성인에게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연방법상 보호. 연방 차별금지법은 일부 경우에 공립학교가 LEP,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 부모에게 보조 기기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예를 들어, 학교는 학부모 상담회와 같이 자녀의 교육과 관련하여 학교가 주최하는 활동에서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 부모에게 ASL 통역인을 제공해야 합니다.[88] 또한 학교는 장애인 학생의 LEP, 청각장애인 또는 난청인 부모가 자녀의 IEPs와 관련된 계획 및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89]

주법상 보호. 뉴욕주의 모든 학군은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적절한 정보를 ELL 학생의 부모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각 학군은 이러한 부모를 대상으로, 자녀의 프로그램 선택지 및 관련 주 기준과 연례 평가에 대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고품질의 오리엔테이션 세션을 제공해야 합니다.[90]

학군은 매년 최소 1회, ELL 학생의 각 부모와 만나 학생의 언어 발달 진행 상황과 자녀의 프로그램 목표를 검토해야 합니다.[91] 이러한 회의는 학부모 상담회나 분기별 성취도 회의와 같이 모든 부모를 대상으로 제공되는 기타 회의와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92] 이러한 회의에서 학군은 LEP 부모에게 부모가 가장 잘 이해하는 언어 또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자격을 갖춘 통역인을 제공해야 합니다.[93]

특별 보호가 학교 징계에 적용됩니다.

학교가 학생을 최대 5일까지 정학시키려는 경우:

- 학교는 즉시 부모의 주 언어 또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94]
- 통지에는 사건에 대한 설명이 제공되어야 하며, 정학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학교장과 즉각적인 비공식 면담을 요청할 권리를 부모에게 알려야 합니다.[95]
- 비공식 면담이 열리는 경우, 부모의 주 언어 또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96]

정학 기간이 5일을 초과하는 경우, 학생은 공정 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97] 이러한 심리에서 학생은 변호인에 의해 대표될 권리, 증인을 제시하고 질문할 권리, 그리고 증거를 제출할 권리를 가집니다.[98] ELL 학생과 LEP 부모는 공정 심리를 위해 학교에 통역인 제공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99]

뉴욕시 공립학교(NYCPS)에 재학 중인 학생의 부모인 경우, NYCPS 직원과 의사소통하기 위해 언어 지원을 요청하면 번역 및 통역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100] NYCPS 직원과 상호작용할 때의 언어 접근 권리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NYCPS 웹사이트 NYCPS 웹사이트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school-environment/hello)와 학부모 권리 장전(Parents' Bill of Rights) 및 학부모 권리 장전 (https://www.schools.nyc.gov/school-life/know-your-rights/parents-bill-of-rights)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법집행 언어 접근

법집행기관과 관련된 언어 접근 권리는 여러분이 상대하는 기관에 따라 달라집니다.

## 뉴욕주 경찰

뉴욕주의 언어 접근법이 적용되는 다른 주 기관과 마찬가지로, 뉴욕주 경찰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모든 언어에 대해 구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101] 또한 LEP 뉴욕 주민들이 사용하는 비영어권 언어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12개 언어로 작성된 주요 기관 문서의 서면 번역을 제공해야 합니다.[102]

추가로, 주 경찰의 경찰관 및 기타 직원은 전화 통화 및 사전에 예정된 약속 시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103] 이들은 현장 또는 경찰 사무실에서의 대면 상황에서도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104] 긴급 상황 또는 범죄자 체포와 같이 시간이 본질인 경우는 예외입니다.[105] 주 경찰은 시간이 비교적 덜 중요한 일부 체포 상황에서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106]

## 뉴욕시 경찰국 (NYPD)

NYPD는 뉴욕시 법률에 따라 다음을 포함한 언어 접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 무료 통역 서비스
- NYPD에서 가장 흔히 배포되는 문서의 번역본
- 이러한 언어 접근 서비스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는 안내 표지 게시[107]

여러분에게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NYPD는 일반적으로 NYPD 인증 통역인을 제공하거나 랭귀지 라인(Language Line) 서비스를 사용해야 합니다.[108] 단, NYPD 정책은 경찰관들이 "범죄가 발생했는지 판단하거나, 의료 치료를 제공 혹은 받거나, 범죄 가해자를 체포할 목적으로 LEP 개인들에게 즉각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중언어를 구사하는 지역사회 성인 구성원"을 활용하는 것을 허용합니다.[109] 어떠한 경찰 사건에서도 아동을 통역인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110]

## 가정폭력

뉴욕주 전역에서 가정 내 범죄(괴롭힘, 위협, 스토킹, 성적 학대 등)의 생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해당 사건을 조사하는 모든 법집행관 또는 검사는 여러분에게 법적 권리에 대한 서면 통지를 제공해야 하며, 이 통지는 쉬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또는 러시아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해당 통지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다국어로 정보를 제공하는 뉴욕주 24시간 가정폭력 및 성폭력 핫라인 번호 **(전화 800-942-6906** 또는 **문자 844-997-2121**)
-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을 위한 711 전화 안내[111]

가정폭력의 생존자 또는 피해자인 경우 뉴욕주 가정폭력 예방국(Office for the Prevention of Domestic Violence) 웹사이트(https://opdv.ny.gov/survivors-victims)에서 추가적인 도움 및 지원 자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연방 이민세관단속국 (ICE)

ICE 요원이 여러분의 집에 오거나 질문을 위해 멈춰 세우는 경우, 여러분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은 읽을 수 없는 문서에 서명하는 것을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ICE 정책에 따르면, ICE 시설은 LEP,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 수감자에게 보조 기기 및 서비스, 통역인, 번역 서비스를 포함한 의사소통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112 단, 이 정책은 ICE 자체적으로만 집행될 수 있으며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연방법에 따른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의 언어 접근 권리

청각장애인 또는 난청인인 경우, 법집행기관을 상대할 때 연방법에 따른 언어 접근 권리가 있습니다.

**미국 장애인법**은 주, 카운티, 시 법집행기관에 의한 체포 및 심문을 포함하여 여러분이 주 및 지방 법집행기관과 접촉하는 상황에 적용됩니다.[113] 이러한 기관에는 주 경찰, 카운티 보안관, 시 경찰국 및 기타 지방 경찰 부서가 포함됩니다. ADA에 따라, 법집행관은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에게 통역인 또는 보조 기기와 같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114] 법집행관은 여러분이 편의를 요청한 경우 또는 그러한 필요성이 명백한 경우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115] 단, 특정 편의가 합리적인지 여부는 해당 접촉의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에 더하여, 긴급 상황이거나, 편의 제공이 법집행관 또는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증거 훼손을 허용하거나, 정당한 법집행 활동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116]

**재활법**은 ICE를 포함한 연방 행정부 기관과 여러분이 접촉하는 상황에서 유사한 보호를 제공합니다.[117] 이 법은 또한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주, 카운티, 지방 법집행기관에도 적용됩니다.[118]

## 헌법상 보호

미국 헌법은 주 및 연방 법집행관이 수행하는 형사 수사에서 제한적인 언어 접근 보호를 제공합니다. 법집행관이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미란다 고지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여러분이 하는 불리한 진술은 형사 재판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119] 이와 유사하게, 법집행관이 의복, 차량, 주거지 또는 기타 재산에 대한 수색에 자발적으로 동의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 여러분은 해당 요청을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120] 여러분이 요청을 이해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집행관이 수색을 진행한 경우, 여러분의 변호사는 그 수색에서 발견된 물건을 범죄 증거로 사용하는 검사의 권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121]

# 투표 언어 접근

여러분이 LEP, 청각장애인 또는 난청인인 경우, 뉴욕에서 투표할 때 무료 언어 접근 지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연방 투표권법(VRA)은 청각장애인 또는 난청인이나 언어 소수 집단 구성원에 대해 차별적인 투표 관행이나 절차를 금지합니다.[122] VRA는 언어 소수 집단 구성원을 "미국 원주민, 아시아계 미국인, 알래스카 원주민 또는 스페인계 혈통을 가진 사람들"로 정의합니다.[123] 또한 연방법은 선거 관련 자료 및 투표 시스템에 언어 소수 집단에 속한 LEP 구성원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124]

여러분이 LEP, 청각장애인 또는 난청인인 경우, VRA에 따라 여러분이 선택한 사람을 동반하여 투표 보조를 받을 수 있으며, 그 사람은 고용주나 노동조합 대표여서는 안 됩니다.[125]

VRA에 따라, 뉴욕의 일부 카운티는 특정 언어 소수 집단의 언어로 보충적인 언어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126] 이러한 필수 지원에는 투표용지, 유권자 등록 양식, 투표 관련 공지, 지침, 지원, 그리고 기타 선거와 관련된 자료 및 정보의 번역이 포함됩니다.[127] 다음 뉴욕 카운티들은 명시된 언어 소수 집단 구성원에게 언어 접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브롱스 카운티: 히스패닉
- 킹스 카운티: 히스패닉 및 중국계(대만계 포함)
- 먼로 카운티: 히스패닉
- 나소 카운티: 히스패닉
- 뉴욕 카운티: 히스패닉 및 중국계(대만계 포함)
- 퀸즈 카운티: 히스패닉, 아시아계 인도인(시크 포함), 방글라데시계, 중국계(대만계 포함) 및 한국계
- 서퍽 카운티: 히스패닉
-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히스패닉[128]

## 뉴욕주 투표권법 (New York State Voting Rights Act, NYVRA)

뉴욕의 자체적인 투표권법은 지방 투표소에서 LEP 유권자를 위한 추가적인 지원을 요구합니다. NYVRA는 지방 관할구역(예: 카운티, 시, 타운, 빌리지, 학군)과 선거관리위원회가 특정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비영어권 언어로 된 투표 자료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건은 다음 중 하나입니다.

- 지방 관할구역 내 투표 연령 시민 중 하나의 언어 소수 집단에 속한 LEP 시민이 2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129] 지방 관할구역 내 해당 시민의 수는 300명 이상이어야 한다.[130]
- 지방 관할구역 내 투표 연령 시민 중 하나의 언어 소수 집단에 속한 LEP 시민이 4,000명을 초과하는 경우.[131]

이 중 어느 하나의 조건이라도 충족되면, 해당 지방 관할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적절한 비영어권 언어로 다음과 같은 언어 접근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 투표용지(ballots)
- 등록 또는 투표 관련 공지
- 양식 및 지침
- 투표 보조
- 기타 선거 관련 자료 또는 정보[132]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를 위해 언어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지방 관할권 목록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록과 NYVRA에 대한 추가 정보는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https://elections.ny.gov/john-r-lewis-voting-rights-act-new-yor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뉴욕주 보호 마련

뉴욕에서는 주 및 지방 법률, 행정명령, 정책의 폭넓은 망으로 여러분의 언어 접근 권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일부 법률은 여러분이 사용하는 언어 또는 청각 능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 다른 법률은 정부 기관, 의료 제공자, 약국, 법원, 투표소, 고용주 및 기타 여러 서비스와 활동이 **적극적으로** 언어 접근 편의, 보조 기기 및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

주 및 지방의 차별금지법은 언어 접근과 관련된 두 가지 주요 유형의 차별을 금지합니다.

-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 특정 국적에 대한 편견에 근거한 경우, 이는 출신 국가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133]
- 청각장애인 또는 난청인에게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하지 않거나 서비스를 거부하는 경우, 이는 장애 차별에 해당할 수 있다.[134]

**뉴욕주 인권법** (https://dhr.ny.gov/new-york-state-human-rights-law?page=0)은 위 두 가지 유형의 차별뿐만 아니라 인종, 시민권, 이민 신분, 성별, 성적 지향 및 기타 여러 보호 대상 신분에 따른 차별을 금지합니다. 이러한 차별금지 보호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적용됩니다.

- 고용
- 교육
- 주거
- 보건소 및 병원, 소매점, 식당, 호텔, 영화관, 주간 보호시설, 공공건물과 같은 공공 편의시설[135]

**뉴욕 민권법** 또한 일부 상황에서 여러분의 언어 접근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민권법은 개인, 사업체, 고용주, 주 기관 또는 지방 정부가 여러분의 시민권을 침해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136] 이러한 권리에는 국적 또는 장애를 이유로 차별을 받는 일 없이 근로하고, 교육을 받고, 주거를 이용하며, 상점, 사업체, 교통 제공자, 정부 기관 및 기타 공공에 개방된 장소를 이용할 권리가 포함됩니다.[137]

뉴욕의 여러 도시는 지방 차원에서 유사한 보호를 제공합니다. **뉴욕시 인권법**은 고용, 주거, 대출 관행 및 공공 편의 시설에서 장애 및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138] 버팔로, 로체스터, 앨버니를 포함한 다른 도시들도 장애 및 출신 국가 차별을 금지하는 자체적인 차별금지법을 두고 있습니다.[139]

## 뉴욕주 언어 접근법 (New York State Language Access Law)

뉴욕주 언어 접근법 (https://ogs.ny.gov/new-york-state-language-access-law)에 따라, 공공에게 서비스나 혜택을 제공하는 주 기관은 LEP 개인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140] 이러한 기관은 무엇보다도 LEP 뉴욕 주민들이 사용하는 비영어권 언어 중 가장 널리 사용되는 다음 12개 언어로 모든 주요 문서를 번역해야 합니다.[141]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이디시어, 벵골어, 한국어, 아이티-크레올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우르두어[142]

**주요 문서**란 여러분이 기관의 서비스나 혜택을 받는 데 필요한 정보가 포함된 종이 및 디지털 문서, 그리고 법적으로 작성이 요구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143] 또한 이러한 기관은 여러분의 주 언어가 가장 널리 사용되는 12개 언어 중 하나가 아니더라도 여러분의 주 언어로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144] 언어 접근법에 대하여 본 안내서의 “통역 및 번역 서비스 접근” 섹션에서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주 언어 접근법은 연방, 카운티 또는 시 기관에는 직접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부 카운티와 시는 언어 접근법을 채택하거나 자체적인 언어 접근법 및 행정명령을 제정하였습니다.

뉴욕 언어 접근 사무소(Office of Language Access) 웹사이트(https://ogs.ny.gov/language-access-resources)에서는 다음과 같은 유용한 언어 접근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언어 접근 권리 안내 책자
  - (https://ogs.ny.gov/know-your-rights" \l ":~:text=Download%20the%20Your%20Language%20Access%20Rights%20Brochure" \t "_blank" \o "https://ogs.ny.gov/know-your-rights#:~:text=Download%20the%20Your%20Language%20Access%20Rights%20Brochure)
- "I Speak" 카드
  - (https://ogs.ny.gov/system/files/documents/2025/02/2025-ola-ispeak-card-web.pdf" \t "_blank" \o "https://ogs.ny.gov/system/files/documents/2025/02/2025-ola-ispeak-card-web.pdf)
- 양식 및 문서 번역본
  - (https://ogs.ny.gov/translated-documents" \t "_blank" \o "https://ogs.ny.gov/translated-documents)
- ASL 통역 모범 사례
  - (https://ogs.ny.gov/system/files/documents/2025/01/best-practices-for-working-with-an-asl-interpreter.pdf" \t "_blank" \o "https://ogs.ny.gov/system/files/documents/2025/01/best-practices-for-working-with-an-asl-interpreter.pdf)
- 및 번역 프로젝트 모범 사례
  - (https://ogs.ny.gov/system/files/documents/2024/09/10-best-practices-for-translation-projects.pdf" \t "_blank" \o "https://ogs.ny.gov/system/files/documents/2024/09/10-best-practices-for-translation-projects.pdf)

그에 더하여, 일부 주 및 지방 기관에는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 뉴욕 주민을 위한 자원을 안내하고 접근성 서비스를 조정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부서가 있습니다.

- 뉴욕주 청각, 시각장애인 및 난청인 사무소
  - (https://www.ny.gov/programs/new-york-state-deaf-deafblind-and-hard-hearing-office)
- 뉴욕시장 발달장애인 사무소
  - (https://www.nyc.gov/site/mopd/resources/resources.page)

-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발달장애인 사무소
    - (https://disabled.westchestergov.com/)
- 서퍽 카운티 발달장애인 사무소
    - (https://www.suffolkcountyny.gov/Elected-Officials/County-Executive/People-With-Disabilities)
- 나소 카운티 신체장애인 사무소
    - (https://www.nassaucountyny.gov/3295/For-Disabled-Residents)

일부 뉴욕 법률은 **특정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서 여러분의 언어 접근 권리를 보호합니다. 여기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 **투표 및 선거**. 뉴욕주 존 R. 루이스 투표권법(John R. Lewis Voting Rights Act of New York)(NYVRA)(https://ag.ny.gov/resources/organizations/new-york-voting-rights-act)은 특정 상황에서 선거관리위원회 및 카운티, 시, 타운, 빌리지 및 학군과 같은 지방 관할구역이 영어가 아닌 언어로 된 투표 자료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145] 본 안내서의 "투표 언어 접근" 섹션에서 NYVRA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소송.** 여러분이 주 법원의 민사 또는 형사 절차에서 당사자(예를 들어, 원고, 피고, 청구인 또는 피청구인) 또는 증인인 경우, 또는 가정법원 절차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부모나 보호자인 경우 무료 통역인을 이용할 권리가 있습니다.[146] 뉴욕주 법원 시스템은 여러분이 법정 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무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147] 다른 주 법률은 법원이 이혼, 양육권, 자녀 양육비 및 기타 가정법원 절차에서 발부되는 보호명령(일반적으로 '접근금지명령'으로 불림)을 포함하여, 중요 문서를 번역하도록 요구합니다.[148]
- **의료 서비스.** 병원 환자 권리장전(Hospital Patients' Bill of Rights)에 따라, 병원에서 받는 모든 치료에 대해 사전 동의를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 및 진단을 포함한 완전한 정보를 받아야 합니다.[149] 이는 여러분이 LEP, 청각장애인 또는 난청인 환자인 경우, 병원이 숙련된 통역인을 제공하여 해당 정보를 이해하도록 도와야 함을 의미합니다.[150] 병원은 또한 언어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언어 지원이 필요한 환자를 식별하는 정책을 채택하며, 무료 언어 지원 서비스 이용 방법을 요약한 자료를 마련해야 합니다.[151]

  약국 체인은 LEP 환자에게 처방전 라벨 및 기타 서면 자료의 번역과 구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152]

- **고용.** 여러분이 신규 채용된 경우, 고용주는 임금 관련 정보를 여러분의 주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153] 여러분이 업무 중 부상을 당해 주 산재보상위원회에 정보, 서비스 또는 급여를 요청하는 경우, 중요 문서의 번역과 통역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합니다.[154] 그에 더하여, 주 인권법에 따르면 고용주가 장애 또는 출신 국가를 비롯한 기타 보호 대상 신분을 이유로 직원 또는 구직자인 여러분을 차별하는 것은 불법입니다.[155]
- **교육.**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은 학교에서 언어 접근 권리를 가집니다. **공립학교** 학군은 영어 학습자(ELL) 학생을 위해 특정한 편의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러한 편의 및 서비스에는 이중언어 교육 또는 영어 신학습자 프로그램이 포함됩니다.[156] 그에 더하여 ELL 학생의 부모인 경우, 공립학교는 여러분의 주 언어 또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여러분과 면담하고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157] **차터 스쿨**은 공립학교와 유사하고 동등한 수준의 서비스를 ELL 학생에게 제공해야 합니다.[158]

  주 차별금지법은 **공립 및 사립학교 모두**에서 여러분의 언어 접근 권리를 보호합니다. 이러한 법은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 학생을 위한 합리적인 편의 제공을 요구하고, 출신 국가는 물론 기타 보호 대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159]

  본 안내서의 "교육 언어 접근" 섹션에서 학생과 부모를 위한 언어 접근 보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뉴욕 법률에 따라 여러분에게 언어 접근 서비스 및 편의를 제공해야 하는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 밖에도 다음과 같은 중요 문서 및 정보의 번역을 요구하는 법률이 존재합니다.

- 주택담보대출 및 압류 관련 정보[160]
-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이용약관[161]
-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응급 치료[162]
- 이민 지원 서비스 계약[163]

이와 같은 주 법률들은 함께 작용하여 연방정부에 의해 박탈되거나 약화될 수 없는 강력한 언어 접근 권리와 자원을 제공합니다.

# 연방 명령 및 정책

연방 명령과 정책은 주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따라 보장되는 뉴욕주 내 여러분의 언어 접근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164] 또한 연방법은 계속해서 여러분과 수백만 명의 LEP, 청각장애인, 난청인 뉴욕 주민 및 우리 주를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중요한 기본적 보호를 제공합니다. 연방법을 변경할 권한은 대통령이나 연방 기관이 아니라 오직 의회에만 있습니다.

## 대통령에게는 어떤 권한이 있나요?

미국 헌법에 따라 법을 제정하는 책임은 의회에 있으며, 대통령은 그 법이 "충실히 집행되도록", 즉 적절하게 이행되도록 할 책임이 있습니다.[165] 대통령이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한 가지 방법은 **행정명령**이라 불리는 서면 지침을 발행하여 연방 기관 및 기타 주체들에게 연방법을 정책 및 기타 조치를 통해 어떻게 해석하고 집행해야 하는지를 지시하는 것입니다.

## 연방 행정명령 및 정책

2025년 3월 1일, 대통령은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였습니다. 또한 이 명령은 언어 접근 서비스를 개선하도록 기관에 지시하였던 이전의 행정명령을 철회하였습니다.[166] 2025년 3월 명령 이후, 미국 법무부(DOJ)는 대통령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연방 기관들에 다양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167] 이러한 조치에는 법이 허용하는 경우 영어로만 주어지는 서비스 제공, 그리고 언어 접근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인공지능(AI) 및 기계 번역을 활용하여 비용을 절감하는 방안 등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여러 중요한 측면에서 언어 접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연방 기관들은 자신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에서 LEP 개인에게 언어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축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AI 및 기계 번역에 대한 기관의 의존도가 높아질 경우, 여전히 제공되는 언어 접근 서비스의 정확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그에 더하여, 전통적으로 언어 접근 관련 법과 정책을 집행해 오던 연방 기관들이 그러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줄이거나 완전히 중단할 가능성도 있습니다.[168] 이는 연방 조치가 여러분의 언어 접근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몇 가지 방식에 불과하며, 본 안내서에서 그 모든 사례를 열거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변화가 중대하더라도, 여러분은 여전히 연방법, 주 법률, 지방자치법에 따라 뉴욕에서 강력한 언어 접근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리에 대해서는 본 안내서의 다른 섹션에서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연방법이 여전히 제공하는 언어 접근 보호는 어떤 것인가요?

연방법은 계속해서 LEP, 청각장애인, 난청인 개인에게 중요한 권리 및 보호를 제공합니다. 이러한 법률의 개정 또는 폐지는 대통령이나 연방 기관이 아니라 오직 의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169]

연방법은 광범위한 서비스와 단체 전반에 걸쳐 언어 접근권과 관련된 권리 및 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업, 고용주, 기관 및 기타 단체들은 자신들에게 적용되는 연방법을 계속 준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국 장애인법(ADA)에 따라 고용주, 정부 기관, 교통 제공자, 의료 시설, 기타 공공에 개방된 사업체 및 서비스는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에게 보조 기기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170]

기타 연방법에 따라,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수혜자는 특정 언어 접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171] 연방 재정 지원은 보조금, 교육, 장비 사용, 기타 형태의 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이러한 지원을 받는 기관에는 다음과 같은 곳들이 포함됩니다.

- 공립학교
- 병원
- 요양원
- 종합대학 및 전문대학
- 가족 및 아동을 위한 프로그램
- 공공 및 민간 계약자 및 하청업체
- 주, 카운티 및 지방 정부기관

그에 더하여, 수십 개의 연방법은 특정 상황에서 LEP 개인,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교육.** 연방 평등 교육 기회법(EEOA)에 따라 공립학교는 영어 학습자(ELL)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172] 장애인 교육법(IDEA)은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 학생들이 적절한 교육적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학군에 요구합니다.[173] 그 밖의 법률은 ELL 아동을 위한 이중언어 교육 및 기타 서비스를 위해 연방 정부가 자원을 배정하도록 요구합니다.[174] 본 안내서의 "교육 언어 접근" 섹션에서 교육에 관련된 언어 접근 보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 **투표.** 투표권법은 언어 소수 집단 구성원에 대해 차별적인 투표 관행 및 절차를 금지합니다.[175] 법률상 이들 개인은 "미국 원주민, 아시아계 미국인, 알래스카 원주민 또는 스페인계 혈통을 가진 사람들"로 정의됩니다.[176] 그에 더하여 이 법은 LEP,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 유권자가 자신이 선택한 사람을 동반하여 투표에 도움을 받도록 허용합니다.[177]
- **의료 서비스.** 부담적정보험법(ACA)은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보건 프로그램 및 활동이 장애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합니다.[178] 특정 상황에서는 언어에 기반한 차별이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의 한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179] ACA와 마찬가지로, 재활법은 연방 자금을 받는 의료 제공자가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에게 보조 기기와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180] ADA는 모든 민간 및 공공 의료 시설과 제공자에게 유사한 의무를 부과합니다.[181] 본 안내서의 "의료 언어 접근" 섹션에서 교육에 관련된 언어 접근 보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습니다.
- **주거.** 공정주택법(FHA)은 주택의 판매, 임대 또는 금융 제공 과정에서 LEP,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 개인에 대한 차별을 금지합니다.[182]
- **재향군인 업무.** LEP 재향군인이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재향군인 업무부(VA)가 의료 시설 및 아웃리치 서비스에서 특정 언어 접근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183]

- **고용.** ADA에 따라 고용주는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 근로자를 위해 합리적인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184] 다른 연방법은 장애 및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을 금지합니다.[185] 또 다른 법률은 특정 연방 기관 및 프로그램이 고용 관련 정보를 여러 언어로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186]
- **연방 법원 절차.** LEP 개인,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은 연방 법원 절차에서 인증 통역인을 제공받아야 합니다.[187] 인증 통역인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격을 갖춘 통역인이 제공되어야 합니다.[188]
- **정부 혜택.** 푸드 스탬프법에 따라 저소득 LEP 가구가 다수 거주하는 지역에서 SNAP 혜택을 관리 및 제공하는 주 기관은 이중언어 인쇄 자료와 인력을 사용해야 합니다.[189] 정부 복지를 관리 및 제공하는 기관은 또한 ADA의 접근성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 **비상 관리 및 재난 구호.** 연방법은 대규모 재난 또는 비상사태 이후 장애 또는 영어 능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합니다.[190] 이는 물자 배분, 신청 처리, 기타 구호 및 지원 활동에 적용됩니다.[191] 연방재난관리청(FEMA)은 비상사태 및 대규모 재난 대비 계획 수립 시 LEP 인구 집단을 고려하기 위해 주 및 지방 정부와 협력해야 합니다.[192] 또한 FEMA는 비상사태 또는 대규모 재난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제공되는 정보를 LEP 개인,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193] 더 나아가 기술적으로 가능한 한, FEMA는 LEP 개인 및 장애인들에게 경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방식으로 통합 공공 경보 및 경고 시스템(Public Alert and Warning System)을 운영해야 합니다.[194] 이 경보 및 경고 시스템은 연방, 주, 부족 및 지방 당국이 경계 및 주의 사항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교통.** ADA는 교통 제공자가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 여행자를 위해 보조 기기 및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195] 이 의무는 공공 교통 시스템뿐만 아니라 택시, 전세버스, 호텔 셔틀과 같은 민간 교통 제공자에게도 적용됩니다. ADA는 항공 여행에는 적용되지 않지만,[196] 항공운송사업자 접근법(Air Carriers Access Act)은 항공사에 의한 장애 기반 차별을 금지합니다.[197]

다른 법률은 특정 기업 및 기관이 정보를 여러 언어로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198]

연방 정부가 이러한 법적 보호에 대한 집행 노력을 축소하더라도, 개인, 단체 및 주 법무장관은 여전히 이러한 법률 다수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여 여러분이 중요한 서비스, 활동 및 기관을 계속 이용하도록 보장할 수 있습니다.

# 민원

본인의 언어 접근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생각하시는 경우, 주, 카운티, 또는 지방 기관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를 제기해야 할 적절한 기관은 사건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적절한 언어 접근 서비스 또는 편의 제공을 받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경우, 아래 표를 참고하여 어디에 민원을 제기해야 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정부 기관

**문제**: 본 안내서의 "통역 및 번역 서비스 접근" 섹션에 설명된 바와 같이, 주정부 기관이 주 언어 접근법에 따라 언어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불만사항 접수처:** 뉴욕 언어 접근 사무소 (https://ogs.ny.gov/office-language-access)에 사무소의 언어 접근 민원 양식 (https://languageaccess.ny.gov/en-US/)을 사용하여 연락하세요.

## 뉴욕시 기관

**문제:** 뉴욕시 기관이 시 법률에 따라 언어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불만사항 접수처:** 311 또는 212-NEW-YORK (212-639-9675)에 전화하세요. 311 정보 웹사이트(https://portal.311.nyc.gov/article/?kanumber=KA-02630)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세요.

311은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화하기 전 311에서 제공하는 준비 정보(https://www.nyc.gov/site/immigrants/language-needs/file-complaint.page)를 확인하세요. 이민 신분과 관계없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뉴욕주 경찰

**문제:** 뉴욕주 경찰이 요구되는 언어 접근 서비스 또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불만사항 접수처:** 주 경찰에 직접 (https://troopers.ny.gov/language-access) 민원을 제기하거나 언어 접근 사무소 (https://ogs.ny.gov/office-language-access)에 사무소의 민원 양식 (https://languageaccess.ny.gov/en-US/).을 사용하여 연락하세요.

## NYPD

**문제:** NYPD가 요구되는 언어 접근 서비스 또는 편의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불만사항 접수처:** 311로 전화하거나 NYPD에 212-741-8401로 전화 또는 IAB@NYPD.org에 이메일로 민원을 제기하세요.

## 선거관리위원회

**문제:** 거주 지역의 선거관리위원회가 투표 시 요구되는 언어 접근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거나, 투표 과정에서 차별을 겪었습니다.

**불만사항 접수처:** OAG 투표권 섹션에 212-416-9818로 전화하거나, OAG 민원 양식(https://pcf.ag.ny.gov/form/CIVIL/natureofcomplaint-voting)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세요.

## 뉴욕주 전역

**문제:** 뉴욕주 전역에서 고용, 주거, 교육, 또는 대중에 개방된 사업체나 서비스에 있어 불법적인 언어 기반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불만사항 접수처:** 뉴욕주 인권국(DHR)에 844-NYS-DHR1 (844-697-3471)로 전화하거나 DHR 민원 양식(https://webapps.dhr.ny.gov/discrimination-report)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세요.

또한 OAG 민원 양식(https://ag.ny.gov/file-complaint)을 통해 OAG에 민원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뉴욕시

**문제:** Y뉴욕시에서 주거 또는 임대 관행, 고용, 또는 대중에 개방된 사업체나 서비스에 있어 불법적인 언어 기반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불만사항 접수처:** 뉴욕시 인권위원회(CCHR)에 CCHR 민원 양식(https://www.nyc.gov/site/cchr/about/report-discrimination.page)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세요.

## 소비자 민원

**문제:** 보험회사, 은행, 학자금 대출, 모기지 또는 차압, 보석 보증인, 기타 금융 서비스 또는 상품과 관련한 소비자 민원이 있습니다.

**불만사항 접수처:** 뉴욕주 금융서비스국 민원 양식 (https://www.dfs.ny.gov/complaint)을 사용하여 민원을 제기하세요.

## 뉴욕주 법원

**문제:** 뉴욕주 법원에서 다음 중 하나라도 겪은 경우:

- 법원이 통역사를 배정하지 않거나 배정을 지연시켰다
- 배정된 통역사가 자격이나 능력이 부족하다
- 서면 자료의 번역이 부정확하다
- 법원에서 본인에게 통역사를 직접 데려오라고 요구한다
- 통역사를 요청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

**불만사항 접수처:** 뉴욕주 통합사법시스템 (New York State Unified Court System)의 언어 접근 사무소에 전화( 646-386-5670) 하거나, 이메일 (interpretercomplaints@nycourts.gov) 또는 뉴욕주 통합사법시시템 민원 양식(https://www.cognitoforms. com/NYSUnifiedCourtSystemOCADivision OfTechnology/LanguageAccessComplaintForm)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세요.

## 산재보상위원회

**문제: 산재보상위원회**가 적절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이용 가능한 번역 문서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불만사항 접수처:** 산재보상위원회 민원 양식 (https://languageaccess.ny.gov/en-US/?agency=WCB)을 사용하여 민원을 제기하세요.

## 학교

**문제:** 자녀의 학교에서 요구되는 언어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불만사항 접수처:** 자녀가 뉴욕시 외 지역의 공립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해당 학군의 교육감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자녀가 뉴욕시 내 공립학교에 재학 중이라면, 718-935-2200으로 전화하여 자녀의 언어 접근 서비스와 관련된 민원을 제기하세요. 또는 311로 전화하여 상담원에게 교육 관련 문제가 있다고 설명하세요. 전화 통역은 200개 이상의 언어로 제공됩니다.

뉴욕시 공립학교(NYCPS) 학생의 부모 또는 보호자로서 NYCPS 직원과 소통 시 문서의 번역본이나 통역 서비스를 받지 못했다면, NYCPS 민원 양식(https://forms.office.com/Pages/ResponsePage.aspx?id=tyxJGEXvYUWFcQxC5fesB6Z jF0KTCvxMlSbfIl71Qx-lUQg0T0lDQU1BQVE0 N0dSMVRBMjd BVk0yViQlQCN0PW-cu)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세요.

이미 학군 또는 NYCPS에 민원을 제기했으나 언어 접근 관련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경우, 뉴욕주 교육부에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민원을 제기하십시오. 제목에 "COMPLAINT(민원)"이라고 기재하여 CONAPPTA@nysed.gov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민원을 다음 주소로 보내십시오.

New York State Education Department
Office of ESSA Funded Programs
Attention: Complaint Coordinator
89 Washington Ave., Room 320EB
Albany, New York 12234

민원 절차에 관한 더 많은 정보와 안내 사항은 뉴욕주 교육부 웹사이트(https://www.nysed.gov/essa/new-york-state-essa-funded-programs-complaint-procedures)를 참조하세요.

또한 OAG 민원 양식(https://ag.ny.gov/file-complaint)을 통해 OAG에 민원을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 위의 기관 외에도, 뉴욕주 여러 도시와 카운티에는 자체적인 민원 제기 양식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앨버니**
전화 518-434-5296 또는 이메일 eeo@albanyny.gov로 연락바랍니다.

**버팔로**
버팔로 시 지역사회 개발 블록 보조금 언어 접근 계획 민원 양식(https://www.buffalony.gov/Document Center/View/9301/CDBG-Language-Access-Plan-in-English-Spanish-and-Arabic)을 이용하세요.

**로체스터**
로체스터 언어 접근 코디네이터에게 연락하세요. 코디네이터의 전화번호와 이메일 주소는 시 웹사이트(https://www.cityofrochester.gov/language-access-plan)에 안내되어 있습니다.

**먼로 카운티**
먼로 카운티 언어 접근 계획 민원 양식 (https://www.monroecounty.gov/dei-language)을 이용하세요.

**나소 카운티**
나소 카운티 언어 접근 민원 양식(https://app.nassaucountyny.gov/ca/ complaint/lap.php)을 이용하세요.

**오논다가 카운티**
오논다가 카운티 인권 위원회 민원 양식(https://onondaga.gov/humanrights/complaintform/)을 이용하세요.

**서퍽 카운티**
여러 언어로 제공되는 서퍽 카운티 민원 양식 (https://suffolkcountyny.gov/Elected-Officials/County-Executive/Office-of-Multicultural-Affairs-and-Community-Engagement/Language-Access-Plan)을 이용하세요.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인권 위원회에 914-995-9500 또는 humanrights@westchestercountyny.gov로 민원을 제기하세요.

# 참조 자료

1 뉴욕주 내 병원은 입원, 외래, 응급 서비스 환경에서 LEP,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에게 숙련된 통역인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N.Y. Pub. Health Law § 2803-bb; N.Y. Comp. Codes R. & Regs. (NYCRR) Tit. 10 § 405.7(b)(1). 또한 뉴욕의 병원은 무료 언어 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사실을 환자에게 알리는 안내 표지를 게시해야 하며, 각 환자의 언어 선호와 필요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기록해야 합니다. N.Y. Pub. Health Law § 2803-bb(5)-(7); 10 NYCRR § 405.7(a)(7)(v)-(vii). LEP 약국 이용자는 동일한 소유주를 둔 뉴욕 내 8곳 이상의 약국 가운데 한 약국에서, 적절한 무료 구두 통역 서비스 및 처방전 라벨과 기타 서면 자료에 대한 번역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N.Y. Educ. Law § 6829(1)(a), (2)(a). 이러한 약국은 물론 우편 주문 약국은 LEP 이용자에게 처방 의약품 관련 복약 상담을 제공할 때, 그리고 경고 라벨, 의약품 라벨 또는 기타 서면 자료를 제공할 때에도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8 NYCRR § 63.11(b).

2 N.Y. Office of Gen. Servs. 및 N.Y. Dep't of Motor Vehicles, Language Access Plan for Limited English Proficient Individuals https://ogs.ny.gov/system/files/documents/2024/11/nys-lap-2024_dmv.pdf 참조. DMV는 "다음 카운티에 31개의 공공 사무소(State DM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앨버니, 브롱스, 나소, 뉴욕, 오논다가, 퀸즈, 리치먼드, 로클랜드, 서퍽, 웨스트체스터. 그 외의 카운티에는 DMV 대행인 카운티 서기(County Clerks)가 운영하는 100개의 공공 사무소(County DMVs)가 있으나, 언어 접근법(Language Access Law)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Office of the N.Y. State Comptroller, Report 2024-F-33, Dep't of Motor Vehicles: Language Access Servs., 2025년 4월 10일, https://www.osc.ny.gov/files/state-agencies/audits/pdf/sga-2025-24f33.pdf, 1쪽.

3 N.Y. Exec. Law § 202-a(1).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 본 안내서의 "통역 및 번역 서비스 접근" 섹션에서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4 뉴욕시 법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정부 기관이 최소 100개 언어로 전화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N.Y.C. Admin. Code § 23-1101 et seq. 2019년 Westchester County Executive Order No. 1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운티 부서가 서비스나 급여 제공을 받고자 하는 개인의 주 사용 언어로 부서와 개인 간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부서에서 온라인 번역 도구를 통역에 사용하는 것, "다른 이용자나 비공식 통역인"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신청인 가족을 "주된 번역 수단"으로 의존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지역사회 기반 단체 및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한 사람"을 통역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2012년 Suffolk County Executive Order No. 10의 여러 요건 가운데는, 카운티 행정관(County Executive)의 감독을 받으며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운티 기관이 서비스나 급여 제공을 받고자 하는 개인의 주 사용 언어로 기관과 개인 간 적절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2018년 서퍽 카운티 의회가 Suffolk County Local Law 16을 채택하면서 법률로 성문화되었습니다. Admin. Local Laws, chap. 143. 2013년의 Nassau County Exec. Order No. 72는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운티 부서가 이중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카운티 직원이나 이용 가능한 통역 서비스를 통해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대상자 및/또는 참여자의 주 사용 언어로 적절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5 42 U.S.C. § 5151(a).

6 환자 보호 및 부담적정보험법(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 ACA)는 연방 행정 기관이 운영하거나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보건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어떠한 개인도 참여에서 배제되거나, 혜택이 거부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42 U.S.C. § 18116(a). LEP 개인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보건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이용하려는 경우, 정확하고 적시에 제공되는 언어 접근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5 C.F.R. § 92.201(a), (b). 또한 장애인이 보건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개인에게 보조 기기 및 서비스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도움은 무료로,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적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Id. § 92.202(b).

7 푸드 스탬프법(Food Stamp Act, FSA)은 주를 대신하여 SNAP을 운영하는 카운티 수준의 지방 사무소를 포함, 각 주정부 기관이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가 상당수 거주하는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적절한 이중언어 인력과 인쇄 자료를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7 U.S.C. § 2020(e)(1)(B); Haskins v. Stanton, 621 F. Supp. 622, 628 (N.D. Ind. 1985) 참조 ( 주 및 카운티 기관이 FSA를 위반하여 적절한 이중언어 인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원고의 주장이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결), aff'd, 794 F.2d 1273 (7th Cir. 1986) 일부 법원은 FSA 하에 사적 소송권이 없다고 판시하였으나, Almendares v. Palmer, 284 F. Supp. 2d 799, 808 (N.D. Ohio 2003) 참조, 제7순회 및 제5순회 연방항소법원은 해당 법 하에 주정부 공무원을 상대로 한 사적 소송권을 인정, Haskins, 794 F.2d at 1274 참조 (Cort v. Ash, 422 U.S. 66 (1975) 적용, 및 사적 구제책 암시); Victorian v. Miller, 813 F.2d 718, 724 (5th Cir. 1987); 또한 Owen v. CDPU, No. 21-CV-628-WMC, 2022 WL 203476, at *2 참조 (W.D. Wis. Jan. 24, 2022) (Haskins 언급) 뉴욕주 규정에서는 모든 SNAP 신청자에게 프로그램상의 권리와 책임을 안내해야 하며, 적절한 경우라면 해당 정보는 영어 외의 언어로 제공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18 NYCRR § 387.2(t).

8 "어떠한 사회복지구 또는 공무원도 인종, 피부색, 출신 국가, 연령, 성별, 종교 또는 장애를 이유로 개인을 차별하는 효과를 가지는 정책이나 관행을 수립하거나 적용해서는 안 된다. 이 금지는 계약 또는 기타 협약 하에 참여하는 다른 기관, 단체 또는 시설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제공하는 모든 원조, 보호, 서비스, 급여 또는 특권에 적용된다." 18 NYCRR § 303.1. 뉴욕주 임시 및 장애 지원청(OTDA)의 Administrative Directive 06-ADM-05는 임시 지원, 푸드 스탬프, 가정 에너지 지원 프로그램(Home Energy Assistance Program) 하의 지원을 신청한 LEP,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에 대한 번역, 통역 및 기타 보조 기기와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사회복지구에 지침을 제공합니다. OTDA, Admin. Directive 06-ADM-05, Providing Access to Temp. Assistance Program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or Limited English Proficiency (LEP), Apr. 27, 2006 개정판 참조, https://otda.ny.gov/policy/directives/2006/ADM/06-ADM-05.pdf; 또한 OTDA, Information Letter 17-INF-14, Language Access for Individuals with Limited English Proficiency (LEP), Dec. 19, 2017 참조, https://otda.ny.gov/policy/directives/2017/INF/17-INF-14.pdf (LEP 개인에게 자격을 갖춘 통역인을 제공해야 할 사회복지구의 법적 책임을 재확인 및 "최후의 수단"이 아닌 한 신청인이나 수혜자의 가족 또는 지인에게 통역을 의존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

9 "청각장애인 또는 난청인이 어떠한 성격의 사법 절차에서든 당사자이거나, 그러한 재판의 증인, 배심원 또는 배심원 후보자인 경우, 법원은 모든 경우에 해당 청각장애인 또는 난청인에게 재판을 통역하고 해당 개인의 증언을 통역하기 위해 … 자격을 갖춘 통역인을 임명해야 한다…." N.Y. Judiciary Law § 390(1); 또한 id. § 387 참조 ("어느 법원에서든 통역 서비스가 필요하지만

즉시 투입 가능한 공식 통역인이 없는 경우, 법원은 해당 법원에서 임시로 활동할 통역인을 임명할 수 있다.") 주 규정은 형사 및 민사 주 법원 절차에서 LEP 당사자 및 증인, 그리고 가정법원 절차에서 미성년 당사자의 LEP 부모 또는 보호자에게도 통역 권리를 확대 적용합니다. 22 NYCRR § 217.1(a) ("모든 민사 및 형사 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나 증인 또는 가정법원 절차에 연루된 미성년 당사자의 부모나 보호자가 영어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재판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 서기나 지정된 행정관은 무료 통역인 일정을 잡아 … 전화 또는 실시간 화상 연결로 통역하도록 해야 한다.")

그에 더하여, 미국 헌법 수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Due Process Clause)과 수정 제6조의 대면권 조항(Confrontation Clause)에서는 법원이 피고인의 언어 장벽을 인지하고 있는 경우, LEP,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 형사 피고인에게 통역인을 제공하여 "자신의 방어에 효과적으로 참여"하고 반대 증인을 대면하여 반대 심문할 수 있도록 할 것을 요구합니다. U.S. ex rel. Negron v. State of N.Y., 434 F.2d 386, 389-91 (2d Cir. 1970); People v. DeArmas, 106 A.D.2d 659, 660(2d Dep't 1984)("피고인이 재판 중에 공식 법정 통역인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변호인석에서 자신을 도와줄 개인 통역인을 대동할 기회를 제한한 1심 법원의 결정은,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적법 절차 권리 및 변호인의 효과적인 지원을 받을 권리를 박탈한 결과를 낳았다.") 단 People v. Ramos, 26 N.Y.2d 272, 274 (1970) 참조 ("통역인을 이용할 권리는 …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자신이 영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적절한 방식으로 법원에 알리지 않을 경우 포기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주 법원은 민사 사건의 맥락에서도 실질적인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통역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Matter of Lizotte v. Johnson, 4 Misc. 3d 334, 342 (Sup. Ct., N.Y. Cnty. 2004).

10 22 NYCRR § 217.1(a).

11 예비 절차 및 대배심 절차를 포함하여 미국 지방법원에서 진행되는 모든 형사 또는 민사 절차에 있어, 법원 통역인법(Court Interpreters Act)은 "영어 외의 언어만 사용하거나 이를 주로 사용"하거나, "청각장애로 인해 … 절차 이해 또는 변호인이나 수석법관과의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거나, 질문 이해 및 증언 제출에 제약이 있는" 당사자나 증인에게 통역인을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28 U.S.C. § 1827(d)(1). "재판 절차에 대한 적절한 번역의 일반적 기준은, 영어에 능통한 피고인이라면 청취할 수 있는 재판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지속적인 단어 대 단어 번역으로 제공되는 것을 요구한다." United States v. Joshi, 896 F.2d 1303, 1309 (11th Cir. 1990). 또한 연방 민사소송규칙(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43(d)는 증인의 증언을 받을 때 "법원이 선택한 통역인을 임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연방 형사소송규칙(Federal Rule of Criminal Procedure) 28은 형사 절차에서 연방 법원에 무료 통역인 임명 권한을 부여합니다.

LEP,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 형사 피고인의 통역인을 이용할 권리는 미국 헌법 수정 제5조의 적법절차조항과 수정 제6조의 대면권 조항에 의해서도 추가적으로 보호됩니다. U.S. v. Si, 333 F.3d 1041, 1042-43 (9th Cir. 2003); U.S. v.

Mosquera, 816 F. Supp. 168, 175 (E.D.N.Y. 1993) 참조 (헌법이 문서 번역을 요구한다고 판시)

12 추방이나 망명 절차와 같은 심판적 이민 법원 절차에서 언어 장벽이 비시민권자의 온전하고 공정한 심리를 받을 능력을 방해하는 경우, 이들은 적절한 통역인을 이용할 수 있는 수정헌법 제5조에 따른 적법절차 권리를 가집니다. Amadou v. I.N.S., 226 F.3d 724, 726-27 (6th Cir. 2000); Abdullah v. I.N.S., 184 F.3d 158, 164 (2d Cir. 1999) 참조 (비시민권자가 "국내 체류의 적법성을 방어하는 경우"에는 통역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상정하나, "국경에서 입국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음 (원문 강조)) 더 나아가, 이민 판사는 망명, 추방 유예, 고문방지협약(Convention Against Torture)에 따른 구제 신청과 같은 사안에서 온전하고 공정한 심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통역 서비스가 필요한지 여부를 "적절한 조치를 통해 평가해야" 합니다. B.C. v. Att'y Gen. U.S., 12 F.4th 306, 313-14 (3d Cir. 2021).

13 N.Y. Admin. Pro. Act § 301(6) ("청각장애인이 기관 앞에서 진행되는 심판 절차의 당사자이거나 그 절차의 증인인 경우, 해당 기관은 모든 경우에 국가 또는 뉴욕주 자격 인증 기관의 인증을 받은 자격 있는 통역인을 임명하여 해당 청각장애인에게 절차를 통역하고 그의 증언을 통역해야 한다.")

14 N.Y. Office of Gen. Servs., Language Access Plan for Individuals with Limited English Proficiency (N.Y. State Police), Oct. 1, 2024, https://ogs.ny.gov/system/files/documents/2024/10/nys-lap-2024_nysp.pdf, 5-7, 9-10쪽.

15 Id.

16 Id. 9-10쪽.

17 N.Y.C. Admin. Code § 14-173.

18 N.Y. Exec. Law § 259-i(7)-(8) (면담, 가석방 심문, 예비 심문 또는 가석방 취소 심문에 참여하는 모든 청각장애인 또는 LEP 개인을 위하여 자격 있는 통역인을 임명할 것을 요구)

19 LEP, 청각장애인, 난청인 또는 그 밖에 영어로 읽거나 쓰는 데 어려움이 있어 투표 시 도움이 필요한 경우, 투표를 도울 보조인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해당 투표 보조인은 미국 시민, 등록 유권자, 또는 성인이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고용주, 고용주의 대리인, 또는 소속 노동조합의 임원이나 대리인은 될 수 없습니다. 52 U.S.C. § 10508; Arkansas United v. Thurston, 517 F. Supp. 3d 777, 786 (W.D. Ark. 2021) 참조 (52 U.S.C. § 10508이 LEP 유권자에게 적용된다고 판시) 투표 보조인은 투표 전후 및 투표소 내부도 포함하여, 투표 과정 전반에 걸쳐 도움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52 U.S.C. § 10310(c)(1); OCA-Greater Houston v. Texas, 867 F.3d 604, 614-15 (5th Cir. 2017). 보조인은 투표를 돕기 전에, 유권자에게 부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선서를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N.Y. Elec. Law § 8-306(5). 뉴욕시 시민 참여 위원회(NYC Civic Engagement Commission, NYCCEC)는 선거 기간 동안 LEP 유권자에게 언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NYCCEC의 유권자 언어 지원 프로그램(Voter Language Assistance Program)은 지정된 투표소에서 다음 언어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아랍어, 벵골어, 중국어(광둥어, 만다린), 프랑스어, 아이티-크레올어, 이탈리아어, 한국어, 폴란드어, 러시아어, 우르두어, 이디시어. NYCCEC, Upcoming Elections and Voter Language Assistance Servs. 참조, https://www.nyc.gov/site/civicengagement/our-programs/poll-site-language-access.page; 또한 OAG, Voting Resources: Language Assistance Guidance 참조, https://ag.ny.gov/voting-resources#language.

20 LEP 약국 이용자는 뉴욕 내에 동일한 소유주가 운영하는 8곳 이상의 약국 그룹에 속한 약국에서 적절한 무료 구두 통역 서비스 및 처방전 라벨과 기타 중요 서면 자료에 대한 번역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N.Y. Educ. Law § 6829(1)(a), (2)(a). 이러한 약국과 우편 주문 약국은 LEP 이용자에게 처방 의약품 관련 복약 상담을 제공할 때, 그리고 경고 라벨, 의약품 라벨 또는 기타 서면 자료를 제공할 때에도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8 NYCRR § 63.11(b). 번역 서비스는 "LEP 개인이 선호하는 약국의 주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N.Y. Educ. Law § 6829(2)(a).

21 10 NYCRR § 405.7(a)(7)(v)-(vii), (b)(1); 또한 N.Y. Pub. Health Law § 2803-bb 참조. 뉴욕주 내 병원은 병원 서비스 지역 인구 중 1퍼센트를 초과하는 LEP 집단을 파악하기 위해 연례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파악한 언어에 대해서는 병원이 주요 병원 양식 및 지시문에 대한 번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N.Y. Pub. Health Law § 2803-bb; 10 NYCRR § 405.7(a)(x).

22 N.Y. Office of Gen. Servs. 및 N.Y. Dep't of Motor Vehicles, Language Access Plan for Limited English Proficient Individuals https://ogs.ny.gov/system/files/documents/2024/11/nys-lap-2024_dmv.pdf 참조. DMV는 "다음 카운티에 31개의 공공 자무소(State DM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앨버니, 브롱스, 나소, 뉴욕, 오논다가, 퀸즈, 리치먼드, 로클랜드, 서퍽, 웨스트체스터. 그 외의 카운티에는 DMV 대행인 카운티 서기(County Clerks)가 운영하는 100개의 공공 사무소(County DMVs)가 있으나, 언어 접근법(Language Access Law)의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Office of the N.Y. State Comptroller, Report 2024-F-33, Dep't of Motor Vehicles: Language Access Servs., 2025년 4월 10일, https://www.osc.ny.gov/files/state-agencies/audits/pdf/sga-2025-24f33.pdf, 1쪽.

23 N.Y. Exec. Law § 202-a(1). 이러한 권리에 대하여 본 안내서의 "통역 및 번역 서비스 접근" 섹션에서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24 뉴욕시 법은 가장 빈번하게 배포하는 문서를 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벵골어, 아이티-크레올어, 한국어, 아랍어, 우르두어, 프랑스어, 폴란드어로 번역하도록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기관에 요구합니다. N.Y.C. Admin. Code, § 23-1101 et seq. 2019년 Westchester County Executive Order No. 1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운티 부서가 주요 문서를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프랑스어(아이티-크레올어 포함), 아랍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알바니아어, 그리고 카운티 내 LEP 개인이 가장 널리 사용하는 6개 언어로 번역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012년 Suffolk County Executive Order No. 10은 카운티 행정관의 감독을 받는 대민 서비스 제공 기관이 카운티 내 LEP 개인이 가장 널리 사용하는 6개 비영어권 언어로 주요 문서를 번역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행정명령은 2018년 서퍽 카운티 의회가 Suffolk County Local Law 16을 채택하면서 법률로 성문화되었습니다. Admin. Local Laws, chap. 143. 2013년 Nassau County Executive Order No. 67의 여러 요건 가운데는, 대민 서비스 제공 카운티 부서가 카운티 내 LEP 개인이 가장 널리 사용하는 6개 비영어권 언어로 주요 문서를 번역하도록 요구합니다.

25 N.Y.C. Admin. Code §§ 21-332(b)(2), 23-1102.

26 ACA는 연방 행정 기관이 운영하거나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보건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어떠한 개인도 참여에서 배제되거나, 혜택이 거부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42 U.S.C. § 18116(a). LEP 개인이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를 포함한 보건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이용하려는 경우, 통역 서비스를 포함한 정확하고 적시에 제공되는 언어 접근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5 C.F.R. § 92.201(a)-(b). 자격 있는 보건 프로그램 또는 활동을 운영하는 단체에서 LEP 개인에게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계 번역을 사용하는 경우, "영어가 서투른 개인의 권리, 혜택 또는 실질적 접근에 중요하며, 정확성이 필수적이거나, 원문 문서 또는 자료가 복잡한 비직역적 또는 기술적 언어를 포함한다면," 해당 기계 번역물은 인간 번역가에 의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Id. § 92.201(c)(3).

또한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이 보건 프로그램이나 활동에 참여하고 그 혜택을 누리는 데 필요한 경우, 해당 개인에게 보조 기기 및 서비스가 반드시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도움은 무료로, 접근 가능한 형식으로, 적시에 제공되어야 합니다. Id. § 92.202(b).

27 푸드 스탬프법(FSA)은 주를 대신하여 SNAP을 운영하는 카운티 수준의 지방 사무소를 포함, 각 주정부 기관이 영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저소득 가구가 상당수 거주하는 지역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적절한 이중언어 인쇄 자료를 사용하도록 요구합니다. 7 U.S.C. § 2020(e)(1)(B).

28 John R. Lewis Voting Rights Act of New York(NYVRA)은 "정치적 하위 단위 [예: 카운티, 시, 타운, 빌리지, 학군] 내 언어 소수 집단"이 특정 수치 및 인구 비율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선거를 관리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정치적 하위 단위"에서 "언어 관련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N.Y. Elec. Law § 17-208(1). "언어 소수 집단"은 "미국 원주민, 아시아계 미국인, 알래스카 원주민 또는 스페인계 혈통을 가진 사람들"로 정의됩니다. Id. § 17-204(5-a). NYVRA에서 규정하는 "언어 관련 지원"에는 "유권자 등록 또는 투표 관련 공지, 양식, 지침, 지원 또는 투표용지를 포함한 선거 절차와 관련된 기타 자료나 정보"의 번역이 포함됩니다. Id. § 17-208(2). 스페인어 지원 제공이 요구되는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적 하위 단위 목록 및 기타 언어 지원 제공이 요구되는 카운티 목록은 뉴욕주 선거관리위원회 웹사이트 (https://elections.ny.gov/john-r-lewis-voting-rights-act-new-york)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9 신규 근로자가 채용되면, 고용주는 임금률과 그 산정 기준을 명시한 서면 통지를 영어 및 근로자가 자신의 주 언어라고 밝힌 기타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N.Y. Lab. Law § 195(1)(a). 산재보상위원회는 모든 선호 언어에 대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며, 중요한 양식 및 문서의 번역을 뉴욕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최소 12개 언어(스페인어, 중국어, 러시아어, 이디시어, 벵골어, 한국어, 아이티-크레올어, 이탈리아어, 아랍어, 폴란드어, 프랑스어, 우르두어)로 제공합니다. 통역 서비스 요청 또는 문서 번역은 이메일 LanguageAccessCoordinator@wcb.ny.gov 또는 전화 877-632-4996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언어 접근 서비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산재보상위원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N.Y. Workers' Comp. Law § 17-a(1) 참조 ("산재보상위원회는 (a) 부상당한 근로자가 작성하는 모든 위원회 발행 문서 및 양식, (b) 산재보상 급여 신청 절차에 관한 일반 정보를 제공하는 모든 위원회 문서, (c) 기타 모든 주요 문서의 번역을 제공해야 한다…"); id. § 17-a(2) ("위원회는 서비스, 정보 및/또는 급여 제공과 관련하여 부상당한 근로자에게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0 N.Y. Exec. Law § 202-a(1).

31 Id. § 202-a(1), (4)(a).

32 Id. § 202-a(5).

33 언어 접근법상 OAG는 대중에게 직접 서비스나 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아니지만 언어 접근을 중시하며, 적절한 경우 LEP, 청각장애인, 난청인 대중과의 상호작용에서 통역 및 기타 보조 서비스와 기기를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34 N.Y. Exec. Law § 202-a(1); N.Y. Office of Gen. Servs., New York State Language Access Law, New York State Language Access Law | Office of General Services.

35 N.Y. Exec. Law § 202-a(4)(a).

36 N.Y.C. Admin. Code, § 23-1101 et seq.

37 Id.

38 2019년 Westchester County Executive Order No. 1은 대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카운티 부서가 주요 문서를 스페인어, 이탈리아어, 중국어, 프랑스어(아이티-크레올어 포함), 아랍어, 타갈로그어, 일본어, 알바니아어 및 카운티 내 LEP 개인이 가장 널리 사용하는 6개 언어로 번역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해당 행정명령은 더 나아가 이들 부서가 서비스나 급여 제공을 받고자 하는 개인의 주 사용 언어로 부서와 개인 간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부서에서 온라인 번역 도구를 통역에 사용하는 것, "다른 이용자나 비공식 통역인"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신청인 가족을 "주된 번역 수단"으로 의존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지역사회 기반 단체 및 서비스 제공자가 제공한 사람"을 통역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39 2012년 Suffolk County Executive Order No. 10은 카운티 행정관의 감독을 받는 대민 서비스 제공 기관이 카운티 내 LEP 개인이 가장 널리 사용하는 6개 비영어권 언어로 주요 문서를 번역하도록 요구합니다. 해당 행정명령의 여러 요건 가운데는 이들 기관이 서비스나 급여 제공을 받고자 하는 개인의 주 사용

언어로 기관과 개인 간 적절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행정명령은 2018년 서퍽 카운티 의회가 Suffolk County Local Law 16을 채택하면서 법률로 성문화되었습니다. Admin. Local Laws, chap. 143.

40 2013년 Nassau County Executive Order No. 67의 여러 요건 가운데는, 대민 서비스 제공 카운티 부서가 카운티 내 LEP 개인이 가장 널리 사용하는 6개 비영어권 언어로 주요 문서를 번역하도록 요구합니다. 2013년의 Nassau County Exec. Order No. 72는 이들 부서가 이중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카운티 직원이나 이용 가능한 통역 서비스를 통해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 대상자 및/또는 참여자의 주 사용 언어로 적절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41 먼로 카운티 언어 접근 계획(https://www.monroecounty.gov/dei-language)은 LEP 개인을 위한 합리적 편의를 개발하고 이행할 때 카운티 기관 및 프로그램이 따라야 할 지침을 수립합니다.

42 "'종합병원(general hospital)'이란, 의사의 감독 하에 24시간 기준으로 주로 입원 환자에게 의료 또는 내·외과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응급 치료가 필요한 사람의 입원 또는 치료를 위한 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특정 질병, 부상, 상태 또는 기형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을 포함하여 조직화된 의료진 및 간호 서비스를 보유한 병원을 의미합니다. 종합병원에는 요양형 보건시설, 공중보건센터, 진단센터, 치료센터, 외래 숙소, 조제소 및 하나 이상의 시설을 지원하는 실험실이나 중앙 서비스 시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N.Y. Pub. Health Law § 2801(10).

43 N.Y. Pub. Health Law § 2803-bb; 10 NYCRR § 405.7(b)(1); id. § 405.1 참조 (이러한 요건을 종합병원에 적용)

44 N.Y. Pub. Health Law § 2803-bb(8); 10 NYCRR § 405.7(a)(7)(viii) (16세 미만의 개인은 "긴급한 상황"에서만 통역인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그 사용 사실은 의료 기록에 문서화되어야 함을 규정)

45 N.Y. Pub. Health Law § 2803-bb(6); 10 NYCRR § 405.7(a)(7)(vi).

46 N.Y. Pub. Health Law § 2803-bb(7); 10 NYCRR § 405.7(a)(7)(vii).

47 N.Y. Pub. Health Law § 2803-bb(3); 10 NYCRR § 405.7(a)(7)(iii).

48 N.Y. Pub. Health Law § 2803-bb(5); 10 NYCRR § 405.7(a)(7)(v).

49 N.Y. Pub. Health Law § 2803-bb(4); 10 NYCRR § 405.7(a)(7)(iv). 그에 더하여, 종합병원은 뉴욕주 서비스 지역 인구 중 1퍼센트를 초과하는 LEP 집단을 파악하기 위해 연례 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파악한 언어에 대해서는 병원이 주요 병원 양식 및 지시문에 대한 번역을 제공해야 합니다. N.Y. Pub. Health Law § 2803-bb; 10 NYCRR § 405.7(a)(x).

50 10 NYCRR § 405.7(a)(7)(ix)(a). 이 요건은 환자, 환자의 가족 또는 대리인, 또는 의료 제공자의 통역인 요청에 적용됩니다. Id.; 또한 N.Y. Pub. Health Law § 2803-bb(9) 참조 ("환자, 환자의 가족 또는 대리인, 또는 의료 제공자가 종합병원 행정실에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합리적인 시간 내에 환자에게 통역인 및 시각 및/또는 청각장애인과의 의사소통에 숙련된 인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51 10 NYCRR § 405.7(a)(7)(ix)(a).

52 N.Y. Educ. Law § 6829(2)(a); id. § 6829(1)(a) 참조 (동일한 소유권 하에 뉴욕 내 8개 이상의 약국으로 구성된 약국 그룹에 속한 약국을 적용 대상 약국으로 정의)

53 8 NYCRR § 63.11(b)(1).

54 Id. § 63.11(b)(2).

55 42 U.S.C. § 18116(a) (“어떠한 개인도 … 세액 공제, 보조금 또는 보험 계약을 포함하여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보건 프로그램 또는 활동의 일부이거나, 연방 행정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 대한 참여에서 배제되거나, 혜택이 거부되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45 C.F.R. § 92.201 (미국 보건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주최 하에 있거나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적용 대상 기관이 LEP 개인에게 무료이고 정확하며 적시의 언어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

56 45 C.F.R. § 92.202 (장애인의 보건 프로그램 또는 활동 참여를 지원하도록 적용 대상 기관이 적절한 보조 기기 및 서비스를 무료로 적시에 제공하도록 요구)

57 29 U.S.C. § 794(a)-(b); Basta v. Novant Health Inc., 56 F.4th 307, 318 (4th Cir. 2022) 참조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는 동안 청각장애인 남편이 아내의 의료 대리인 역할을 하려고 했을 때, ASL 통역인 제공을 거부하고 대신 비효율적인 보조 장치를 제공한 병원에 대해 재활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

58 42 U.S.C. §§ 12132, 12182(a) (“어떠한 개인도 공중 이용 시설을 소유, 임차(또는 임대)하거나 운영하는 자에 의해, 장애를 근거로 공중 이용 시설의 재화, 서비스, 시설, 특권, 이점 또는 편의를 온전하고 동등하게 누리는 데 있어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59 N.Y. Exec. Law § 296(2)(a) (출신 국가에 근거한 차별 또한 금지); Loeffler v. Staten Island Univ. Hosp., 582 F.3d 268, 277-78 (2d Cir. 2009) 참조 (청각장애인 환자와 그 아내에게 ASL 통역인을 제공하지 않고 자녀가 통역하도록 강요한 병원의 행위가 주 및 시 인권법 등 여러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중대한 사실상의 쟁점을 발견)

60 N.Y.C. Admin. Code § 8-107(4) (출신 국가에 근거한 차별 또한 금지); Loeffler, 582 F.3d at 277-78 참조.

61 이 안내서는 학생을 지칭할 때 “영어가 서투른 사람(limited English proficient)” 대신 “영어 학습자(English language learner)”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62 EEOA는 "개인의 … 출신 국가를 이유로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것을 금지하며, 여기에는 "수업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동등한 참여를 방해하는 언어 장벽 극복을 위해 교육 기관이 적절히 조치"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20 U.S.C. § 1703(f).

63 Id.; Issa v. Sch. Dist. of Lancaster, 847 F.3d 121, 140 (3d Cir. 2017) 참조 (LEP 학생들에게 열등한 교육을 제공한 학군을 상대로 한 EEOA 청구에서 LEP 학생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음); Methelus v. Sch. Bd. of Collier Cnty., Fla., 243 F. Supp. 3d 1266, 1277 (M.D. Fla. 2017) (학군이 LEP 학생의 공립학교 등록을 거부하고 무학점 성인 프로그램으로 이관했다는 혐의는 EEOA에 따른 청구 사유); New York by Schneiderman v. Utica City Sch. Dist., 177 F. Supp. 3d 739, 753 (N.D.N.Y. 2016) (학군이 LEP 학생들을 열등한 대체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시켰다는 혐의는 EEOA에 따른 청구 사유); T.R. v. Sch. Dist. of Philadelphia, 223 F. Supp. 3d 321, 335 (E.D. Pa. 2016) (장애인 LEP 학생들에게 충분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혐의는 EEOA에 따른 청구 사유)

64 중요 판례인 Lau v. Nichols 사건에서, 대법원은 학군이 중국계 미국인 ELL 학생들에게 이중언어 교육을 제공하지 않음으로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Title VI을 위반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14 U.S. 563, 567-68 (1974); see 42 U.S.C. § 2000d. 이후 대법원은 Title VI상 불평등 효과 책임에 관하여 판시한 바 있으나, Alexander v. Sandoval, 32 U.S. 275 (2001) 참조, 법원들은 Title VI 책임을 판단함에 있어 언어 기반 차별을 출신 국가 차별의 한 형태로 인정한 Lau 판결을 계속 근거로 삼고 있습니다. e.g., T.R. v. Sch. Dist. of Phila., 223 F. Supp. 3d 321, 335 (E.D. Pa. 2016) 참조 ("다수의 연방법원이 언어 기반 차별이 Title VI가 금지하는 출신 국가 차별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다.") (관련 판례들 인용); United States v. Maricopa Cnty., Ariz., 915 F. Supp. 2d 1073, 1079 (D. Ariz. 2012) ("오랜 판례, 연방 규정 및 해당 규정에 대한 기관 해석은 언어 기반 차별이 Title VI상 출신 국가 차별에 해당함을 인정한다.")

65 20 U.S.C. § 1414(b)(3)(A) ("평가 및 기타 평가 자료"는 "정확한 정보를 가장 잘 산출할 가능성이 있는 언어와 형태로 제공 및 실시"되어야 한다고 요구); 또한 id. § 1412(a)(6)(B) 참조 (장애인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해 연방 자금을 지원받는 주에서는 학생을 서비스에 배치하기 위한 시험 및 평가가 학생의 모국어 또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실시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만 예외로 함)

66 Id. § 1414(d)(3)(B).

67 Id. §§ 1415(b)(4), 1439(a)(7).

68 8 N.Y.C.R.R. § 154-2.1(a) ("각 학군은 영어 학습자에게 학군이 제공하는 졸업에 요구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포함, 모든 학교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하여 학생의 연령과 학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동등한 접근을 제공하여야 한다.")

69 N.Y. Const. art. XI, § 1 ("입법부는 이 주의 모든 아동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무상 공립학교 제도의 유지 및 지원을 규정하여야 한다."); Campaign for Fiscal Equity, Inc. v. State, 86 N.Y.2d 307, 315 (1995) (주 헌법은 건전하고 기본적인 교육을 보장합니다); Aristy-Farer v. State, 29 N.Y.3d 501, 514-15 참조 (2017) (학군에 "성공적이지 못한 영어 제2언어 프로그램" 등의 문제가 있었다는 원고의 주장은 주 헌법 위반 청구 사유)

70 뉴욕 교육법(New York Education Law) § 3201(1)은 “누구도 인종, 신념, 피부색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뉴욕주 내 공립학교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주 인권법은 인종, 장애, 출신 국가, 시민권 신분 등 보호 대상 신분을 “이유로 자격을 갖춘 자에게 기관의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학생 또는 지원자에 대한 괴롭힘을 허용하는 행위”를 모든 교육기관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N.Y. Exec. Law § 296(4). 이 규정은 공립학교, 비종교 사립학교, 그리고 영리 목적의 비종교 전문대학, 종합대학, 인가된 사립 직업학교, 영어 학습자 학교에 모두 적용됩니다. Id. § 292(40)(a)-(c). 뉴욕시 인권법 (New York City Human Rights Law)의 유사한 맥락에서, 항소법원 제1부는 “영어가 서투른(LEP) 개인에 대한 차별은 … 출신 국가에 근거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Boureima v. N.Y.C. Hum. Res. Admin., 128 A.D.3d 532, 533 (1st Dep’t 2015). NYSHRL의 출신 국가 차별 금지 규정을 언어에 근거한 차별에 적용하는 해석은 동 법률의 해석 원칙과도 일치하는데, 이 원칙에 따라 법원은 [NYSHRL]의 조항과 유사한 조항을 포함하는 법들을 포함하여 연방 민권법이 그러한 방식으로 해석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NYSHRL의] 구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지 조항을 폭넓게 해석해야 합니다. N.Y. Exec. Law § 300.

뉴욕 민권법은 또한 “인종,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 … 또는 장애 등을 이유로, 어떠한 개인도 … 다른 개인이나 기업, 법인, 기관, 또는 주정부나 그 기관 또는 하위 기관에 의해 … 자신의 시민권에 대하여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N.Y. Civ. Rts. Law § 40-c(2). 이는 행정법(Executive Law)을 통해 교육 차별에도 적용되며, 해당 법은 “출신 국가 … 또는 장애를 … 이유로 한 차별 없이 … 교육을 받을 기회는 이로써 시민권으로 인정되고 선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N.Y. Exec. Law § 291(2).

71 e.g., 8 NYCRR § 154-2.1(a) 참조.

72 Id. § 117.3.

73 Id. § 117.3(b)(2).

74 N.Y. Educ. Law § 3204(2-a)-(2); 8 NYCRR § 154-2.1(a). 이중언어 교육 요건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8 NYCRR §§ 154-2.2(b), 154-2.3(h)(3) 참조. 영어 신학습자(ENL) 프로그램 요건에 관해 더 알아보려면, id. §§ 154-2.2(h), 154-2.3(h)(1)-(2) 참조. 또한 N.Y. Educ. Law § 3204(3)-(8) 참조 ( 이중언어 교육 및 영어 신학습자 프로그램의 자격 기준과 요건을 설명하고, 학군이 ELL 학생, 학부모 및 기타 관련자를 위한 추가 자원과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

모든 학군은 전 학년에 대하여 영어 신학습자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8 NYCRR § 154-2.3(h)(1)-(2). 그에 더하여, 학군은 매년 다음 학년도에 각 학교 및 학년별로 등록이 예상되는 ELL 학생 수를 추산해야 합니다. Id. § 154-2.3(d)(1). 동일 학년에 동일한 비영어권 가정 언어를 사용하는 ELL 학생이 두 곳 이상의 학교에 2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군은 다음 학년도에 추산되는 ELL 학생 인원의 최소 70%에게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Id. § 154-2.3(d)(2). 동일 학년에 동일한 비영어권 가정 언어를 사용하는 ELL 학생이 동일한 학교에 20명 이상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군은 다음 학년도에 해당 학교에서 ELL 학생 전원에게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합니다. Id. § 154-2.3(d)(4).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 해당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학군은 "동일한 학년 수준과 언어에 대해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군 내 다른 학교로 전학할 기회"를 각 ELL 학생에게 제공해야 하며, 학군이 통학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학생에게 교통편을 제공해야 합니다. Id. § 154-2.3(d)(5); 또한 id. § 154-2.3(d)(6) 참조 (8 NYCRR § 154-2.3(d)에 따른 요건에 대해 제한적인 예외를 규정)

75 Id. § 154-2.1(b).

76 1974년에 체결된 Aspira of New York, Inc. v. Board of Education of the City of New York의 동의판결명령은 현재 유효하며, 최근의 연방 행정명령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해당 동의판결명령은 다음과 같은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규정하였다. 즉, 이중언어 교육 대상자 파악 방법, 스페인어 및 영어로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교육 형태, 관련 교육 기준 수립, 교육 자료 준비 및 배포, 인력 모집 및 교육, 적절한 자금 확보, 원고 측과의 지속적인 협의, 정기 보고, 그리고 … 기타 조치를 포함한다…." Aspira of New York, Inc. v. Bd. of Educ. of City of New York, 423 F. Supp. 647, 649 (S.D.N.Y. 1976) (동의판결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피고측의 모독죄를 인정) 동의명령은 https://history.nycourts.gov/wp-content/uploads/2024/09/Aspira-Consent-Decree-8-29-74.pdf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77 20 U.S.C. §§ 1400, 1412(a)(1)(A); Endrew F. ex rel. Joseph F. v. Douglas Cty. Sch. Dist. RE-1, 580 U.S. 386, 399, 403 (2017) 참조 ("IDEA에 따른 실질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학교가 아동의 개별적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산정된 [개별화 교육 프로그램(IEP)]을 제공하여야 한다.").

78 IDEA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제수단은, 원고가 ADA와 IDEA 양측에 따라 모두 이용 가능한 구제를 추구하기 전에 우선 소진되어야 합니다. 20 U.S.C. § 1415(l) ("[IDEA]의 어떠한 규정도 헌법, 1990년 제정된 미국 장애인법, 1973년 제정된 재활법 제5편 또는 장애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기타 연방법에 따라 이용 가능한 권리, 절차 및 구제수단을 제한하거나 축소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단, 본 소편에 따라 이용 가능한 구제를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IDEA가 요구하는 특정 절차는 소진되어야 한다.); Fry v. Napoleon Cmty. Schs., 580 U.S. 154, 170-71 참조 (2017) ("요컨대, IDEA는 개별화된 교육 서비스를 보장하는 반면, ADA Title 2와 § 504는 공공기관에 대한 비차별적 접근을 보장한다."); B. v. Bd. of Educ. Hinsdale Twp., Hinsdale High Sch. Dist. 86, No. 24 CV 12218, 2025 WL 1666697, at *3-6 (N.D. Ill. June 12, 2025) (IDEA, ADA, 재활법 간의 상호관계 및 IDEA의 구제수단 소진 요건을 논의); 또한 K.M. ex rel. Bright v. Tustin Unified Sch. Dist., 725 F.3d 1088, 1100 (9th Cir. 2013) 참조 ("일부 상황에서는, 학교가 IDEA에 따라 요구되는 서비스와는 다른 서비스를 ADA에 따라 청각장애 또는 난청 학생에게 제공하여야 할 수도 있다.")

79 Bd. of Educ. Hinsdale Twp., 2025 WL 1666697, at *4 (28 C.F.R. § 35.160(a)(1)에 제정된 ADA를 시행하는 DOJ 규정을 인용).

80 Id.

81 일반적으로Los Angeles Unified Sch. Dist. v. A.O. by & through Owens, 92 F.4th 1159, 1178 (9th Cir. 2024) 참조 (학군이 제안된 IEP에서 언어 치료 및 청각학 서비스의 제공 빈도와 기간을 명시하지 않아 IDEA를 위반)

82 K.M. ex rel. Bright, 725 F.3d 1103쪽 참조 (ADA가 학군에 단어 대 단어로 의사소통 접근 실시간 번역(Communication Access Realtime Translation)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건을 지방법원으로 환송)

83 Bd. of Educ. Hinsdale Twp., 2025 WL 1666697, at *1 참조 (학군이 제공한 보조 기기 및 서비스를 논의)

84 ADA Title II, 42 U.S.C. § 12132는 공립학교에 적용되며, Title III, id. § 12182는 사립학교에 적용됩니다. Berardelli v. Allied Servs. Inst. of Rehab. Med., 900 F.3d 104, 115 (3d Cir. 2018) 참조 (ADA Title III은 "비장애인이 이용하는 매우 다양한 시설을 적용 범위에 포함시켰으며, 여기에는 연방 자금을 수령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사립학교가 포함된다." (요약))

85 재활법 섹션 504는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학교에 적용됩니다. 29 U.S.C. § 794(a)-(b)(2)-(3).

86 재활법 섹션 504는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전문대학과 종합대학에 적용됩니다. Id. § 794(a)-(b)(2).

87 뉴욕 주 인권법은 장애 등 보호 대상 신분을 "이유로 자격을 갖춘 자에게 기관의 시설 이용을 거부하거나, 학생 또는 지원자에 대한 괴롭힘을 허용하는 행위"를 모든 교육기관에 대해 금지하고 있습니다. N.Y. Exec. Law § 296(4). 이 규정은 공립학교, 비종교 사립학교, 그리고 영리 목적의 비종교 전문대학, 종합대학, 인가된 사립 직업학교, 영어 학습자 학교에 모두 적용됩니다. Id. § 292(40)(a)-(c). 뉴욕주 민권법은 또한 "장애 … 등을 이유로, 어떠한 개인도 … 다른 개인이나 기업, 법인, 기관, 또는 주정부나 그 기관 또는 하위 기관에 의해 … 자신의 시민권에 대하여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N.Y. Civ. Rts. Law § 40-c(2). 이는 행정법을 통해 교육 차별에도 적용되며, 해당 법은 "장애를 … 이유로 한 차별 없이 … 교육을 받을 기회는 이로써 시민권으로 인정되고 선언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N.Y. Exec. Law § 291(2).

88 Rothschild v. Grottenthaler, 907 F.2d 286, 288, 293 (2d Cir. 1990) (재활법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공립학교가 학교 주관 활동에서 학군이 비용을 부담하여 정상 청력 학생의 청각장애인 부모에게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89 20 U.S.C. §§ 1414-1415; Winkelman ex rel. Winkelman v. Parma City Sch. Dist., 550 U.S. 516, 524 (2007) 참조 (IDEA는 "자녀 교육 개발 과정에 부모가 정보에 입각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반적인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T.R. v. Sch. Dist. of Philadelphia, 223 F. Supp. 3d 321, 330 (E.D. Pa. 2016) (학군이 적절한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IEP 과정에 구현된 계획 수립 및 의사 결정에 의미 있게 참여할 수 있는 LEP 학부모의 능력"을 방해했다는 주장은 IDEA 청구 사유가 되기에 충분하다.); 또한 Garcia v. Morath, 624 F. Supp. 3d 690, 696, 699 (W.D. Tex. 2022), report and recommendation adopted, No. 1:21-CV-1011-RP, 2023 WL 163978 (W.D. Tex. Jan. 10, 2023) 참조 (연방 규정은 20 U.S.C. § 1415(b)를 인용하며, IDEA에 따라 자금을 지원받는 학교는 학부모가 IEP 팀 회의 내용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고 인용)

90 Id. § 154-2.3(f)(1).

91 Id. § 154-2.3(f)(5).

92 Id.

93 Id. ("해당 회의는 자격을 갖춘 통역인/번역사가 동석한 가운데, 부모 또는 보호자가 가장 잘 이해하는 언어 또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94 Id. § 100.2(l)(4) (정학 처분에 앞서 필수 통지 및 비공식 면담이 반드시 있어야 하나, "해당 학생의 학교 체류가 인명이나 재산에 지속적인 위험이 되거나 학업 진행을 계속 방해할 위협이 되는 경우"는 예외로 하며, 이 경우 통지 및 비공식 면담은 정학 처분 후 합리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제공되어야 한다고 규정)

95 N.Y. Educ. Law § 3214(3)(b)(1); 8 NYCRR § 100.2(l)(4). 비공식 면담에서 "학생 및/또는 보호자는 사건에 대한 학생의 입장을 제시하고 고발 증인에게 질문할 권한을 가진다." N.Y. Educ. Law § 3214(3)(b)(1).

96 8 NYCRR § 100.2(l)(4).

97 N.Y. Educ. Law § 3214(3)(c)(1).

98 Id.

99 N.Y. State Office of Children and Family Servs., A Guide to Sch. Discipline and Sch. Suspensions for Youth, Parents, and Caregivers (Nov. 2019) ("학생 및/또는 부모/보호자의 주 사용 언어가 영어가 아닌 경우, [공정] 심리에서 통역인 참석을 요청해야 한다.")

100 N.Y.C. Dep't of Educ., Regulation of the Chancelor A-663, Language Access for Parents (issued June 20, 2025), https://www.schools.nyc.gov/docs/default-source/default-document-library/a-663-english.pdf에서 확인 가능.

101 N.Y. Exec. Law § 202-a(4)(a). 본 안내서의 “통역 및 번역 서비스 접근” 섹션에서 언어 접근법에 대해 더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검토한 대부분의 법원은 뉴욕주 인권법(NYSHRL), N.Y. Exec. Law § 296 및 그에 대응하는 뉴욕시 인권법(NYCHRL), N.Y.C. Admin. Code § 8-107이 체포 및 기타 도로상 법집행 접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Letray v. New York State Division of Hum. Rts., 181 A.D.3d 1296, 1296 (4th Dep’t 2020); Madera v. U.S., No. 24-CV-2903 (PKC), 2025 WL 1019139, at *8 (S.D.N.Y. Apr. 4, 2025); O’Brien v. City of Syracuse, No. 5:22-CV-948 (MAD/TWD), 2023 WL 6066036, at *24 n. 11 (N.D.N.Y. Sept. 18, 2023) (관련 판례들 인용); D.H. v. City of N.Y., 309 F. Supp. 3d 52, 81 (S.D.N.Y. 2018) 참조. 단 Matchett v. Brighton Police Dep’t, No. 24-CV-6001-FPG, 2024 WL 4607728, at *2 (W.D.N.Y. Oct. 29, 2024) (“재활법, ADA, 및 NYSHRL에 따른 청구에 대한 법적 기준과 분석은 동일하다.” (요약)); Williams v. City of N.Y., 121 F. Supp. 3d 354, 364 n. 10 (S.D.N.Y. 2015) 참조 (“NYSHRL가 제공하는 보호는 ADA와 동일한 범위로 해석됩니다. … 원고가 ADA에 따른 입증책임을 충족할 수 있다면, 섹션 504, NYSHRL 및 NYCHRL에 따르는 입증책임을 충족하게 된다.”)

102 N.Y. Exec. Law § 202-a(1).

103 N.Y. Office of Gen. Servs., Language Access Plan for Individuals with Limited English Proficiency (N.Y. State Police), Oct. 1, 2024, https://ogs.ny.gov/system/files/documents/2024/10/nys-lap-2024_nysp.pdf, 5-7, 9-10쪽

104 Id.

105 Id. 9-10쪽.

106 Id.

107 N.Y.C. Admin. Code § 23-1102(a); NYPD, Patrol Guide, Procedure No. 212-90: Guidelines for Interaction with Limited English Proficient Persons, https://www.nyc.gov/assets/nypd/downloads/pdf/public_information/public-pguide2.pdf (NYPD 경찰관 및 기타 NYPD 직원의 언어 지원 책임을 상세히 설명)

108 NYPD, 2024 NYPD Language Access Implementation Plan (hereafter, “Language Access Plan”), https://www.nyc.gov/assets/nypd/downloads/pdf/eeo/2024-nypd-language-access-implementation-plan.pdf, 2, 4쪽; 또한 NYPD, Patrol Guide, Procedure No. 212-90 참조. 긴급한 상황이 없는 한, LEP 개인이 관련된 가정폭력 신고에 대응할 때 부서에서 통역인으로 인증된 인원만 사건의 세부사항을 확인해야 하며, LEP 개인에 대한 구금 심문에서도 부서 인증 통역인만 사용해야 합니다. NYPD, Language Access Plan, 9-10쪽.

109 NYPD, Language Access Plan, 4쪽.

110 Id. 10쪽.

111 N.Y. Crim. Procedure Law § 530.11(6).

112 ICE, Performance-Based National Detention Standards 2011, Dec. 2016 개정, https://www.ice.gov/doclib/detention-standards/2011/pbnds2011r2016.pdf (2025년 8월 15일 최종 확인) 해당 기준에 따르면, "지절은 장애가 있는 수감자에게 낭독자, 점자 자료, 오디오 녹음물, 전화 수화기 증폭기, 보청기 호환 전화기, 청각장애인용 통신 장치(TTY), 통역인, 대필가 등의 보조 지원을 포함한 효과적인 의사소통 수단을 필요에 따라 제공해야 합니다. 또한 시설은 LEP 수감자에게 프로그램 및 활동에 대한 실질적인 접근을 제공하기 위해 이중언어 직원 또는 전문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포함한 언어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수감자에게 제공되는 모든 서면 자료는 일반적으로 스페인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가능한 경우, 기타 영어가 서투른 상당수의 사람들을 위한 서면 번역도 제공되어야 합니다. 서면 자료가 번역되지 않은 언어를 사용하거나 문맹인 수감자에게는 구두 통역 또는 지원이 제공되어야 합니다."

113 42 U.S.C. § 12132; Seremeth v. Bd. of Cnty. Comm'rs, 673 F.3d 333, 338 (4th Cir. 2012) 참조 ("ADA는 경찰 심문에 적용된다.")

114 Matchett, 2024 WL 4607728, at *1-5 참조 (통역인 요청에도 불구하고 ASL 통역인을 제공하지 않았음을 사유로 청각장애인 원고들이 911 신고에 대응한 법집행관들을 상대로 ADA 및 재활법 위반 청구를 제기); Williams, 121 F. Supp. 3d 363-69쪽 (체포 현장에서 청각장애인 피체포자에게 통역인 또는 보조 기기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ADA 및 재활법 위반인지 여부에 대해 사실상 쟁점이 존재한다고 판시)

115 Bax v. Doctors Med. Ctr. Of Modesto, Inc., 52 F.4th 858, 869 (9th Cir. 2022); Matchett, 2024 WL 4607728, at *2.

116 Seremeth, 673 F.3d 339쪽 ("긴급 상황에 대한 고려는 편의 제공의 합리성을 판단하는 요소에 포함된다."); Williams, 121 F. Supp. 3d 367쪽 ( 동일한 취지, Seremeth 인용).

117 29 U.S.C. § 794(a); Lopez Cano v. Decker, No. 22 CIV. 7428 (AKH), 2022 WL 17584156, at *4 (S.D.N.Y. Dec. 12, 2022) 참조 ("DHS 및 ICE가 [재활]법의 의미 내에서 행정부 기관이라는 점에는 논쟁의 여지가 … 없다."); Matchett, 2024 WL 4607728, at *2 (재활법과 ADA에 따른 청구에 동일한 법적 기준과 분석을 적용)

118 29 U.S.C. § 794(a).

119 Miranda v. Arizona, 384 U.S. 436, 444 (1966) 참조 ("심문에 앞서, [구금된] 사람은 본인이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본인의 진술은 본인에게 불리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고, 선임 또는 국선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경고를 받아야 합니다. 피고인은 이러한 권리를 포기할 수 있으나, 해당 포기는 자발적이고, 인식한 상태에서, 이성적인 것이어야 한다."); United States v. Perez-Lopez, 348 F.3d 839, 847-49 (9th Cir. 2003) (미란다 고지가 부정확하게 번역된 경우, "미란다 이후의 불리한 진술은 부적절하게 획득한 것이므로 배제되어야 한다"); Rivera v. Granucci, No. CIV. N-87-480 (JAC), 1993 WL 76202, at *7 (D. Conn. Mar. 12, 1993) ("미란다 고지는 피체포자가 이를 이해하는 경우에만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체포자에게 그의

언어로 미란다 고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피체포자의 이후 진술은 수정헌법 제5조 및 제6조상의 권리를 인식한 상태에서 포기한 것이 아님을 사유로 하여 채택되지 않을 수 있다.")

ICE 요원에게 한 범죄 책임 인정도 동일한 보호를 받습니다. U.S. v. Mahmood, 415 F. Supp. 2d 13, 15, 20 (D. Mass. 2006) 참조 (구금 심문 전에 묵비권을 고지하지 않은 ICE 요원에게 한 비시민권자의 불리한 진술을 배제) 그러나 이러한 수정헌법 제5조상의 권리는 추방 절차와 같은 민사 이민 법원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Zuniga v. Garland, 86 F.4th 1236, 1239 (9th Cir. 2023) ("추방 절차와 형사 재판 간의 중대한 차이로 인해, 추방 맥락에서는 미란다 고지가 부적절하다." (요약)); Trias-Hernandez v. I.N.S., 528 F.2d 366, 369 (9th Cir. 1975) ("초기 심문에서 통역인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추방 심문에서 해당 진술을 사용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공정하다고 이 기록을 근거로 결론지을 수는 없다."); cf. Rajah v. Mukasey, 544 F.3d 427, 443 (2d Cir. 2008) ("국토안보부(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등록 프로그램 인터뷰 과정에서 "[비시민권자]가 이민 문서 제출이나 이민 신분 관련 질문에 답변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는 수정헌법 제5조상 특권은 존재하지 않았다.") 단, Matter of Garcia, 17 I. & N. Dec. 319, 321 (BIA 1980) 참조 ("추방 가능성 판단의 기초가 된 피고의 시인이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졌고, 적법절차 요건상 이를 기록에서 배제하도록 요구한다"고 판단하여 추방 절차를 종료); Matter of Toro, 17 I. & N. Dec. 340, 343 (BIA 1980) ("추방 절차에서 증거가 채택되려면, 증명력이 있어야 하며 그 사용이 수정헌법 제5조가 요구하는 적법절차를 피고인에게서 박탈하지 않도록 근본적으로 공정해야 한다. … 체포 및 심문과 관련된 상황은 … 일부 경우 수정헌법 제5조의 적법절차 조항에 따라 증거를 채택할 수 없게 할 수 있다."); 또한 Anim v. Mukasey, 535 F.3d 243, 256 (4th Cir. 2008) 참조 ("이민 절차에는 연방 증거규칙(Federal Rules of Evidence)이 적용되지 않으며, 증거 판단은 적법절차 고려에 의해서만으로 제한된다"고 설명)

120 Schneckloth v. Bustamonte, 412 U.S. 218, 248-49 (1973) 참조 ("국가가 동의에 … 근거한 수색을 정당화하려 할 때, 수정헌법 제4조 및 제14조는 해당 동의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 강압이나 압박의 결과가 아닌,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자발성은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실 문제이다."); United States v. Wilson, 11 F.3d 346, 351 (2d Cir. 1993) (피고인의 "제한된 교육 수준과 영어 지식, 그리고 [마약 단속반 요원들에 의한 아파트] 수색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에 대해 고지받지 못한 점은, 특히 요원들의 침입이 매우 침해적인 성격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그가] 실제로 동의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고 dictum(판시의견)에서 언급)

121 See United States v. Marchi, No. 317CR000553VLB, 2018 WL 1409819, at *8, 11 (D. Conn. Mar. 21, 2018) ("영어 능력의 부족"은 주거지 수색에 대한 동의가 자발적이지 않았음과 그 수색을 통해 획득된 증거는 배제되어야 함을 입증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였다.

122 52 U.S.C. §§ 10301, 10303(f)(2) (시민이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언어 소수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투표권이 부인되거나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관행 및 절차를 금지) 해당 주 또는 정치적 하위 단위의 경우, 모든 투표용지와 투표 관련 자료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언어 소수 집단의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Id. § 10503; OCA-Greater Houston v. Texas, 867 F.3d 604, 615 (5th Cir. 2017) 참조 (LEP 유권자에 대한 통역 지원을 제한한 텍사스의 투표법이 VRA를 위반했다고 판시); In re Cnty. of Monterey Initiative Matter, 427 F. Supp. 2d 958, 964 (N.D. Cal. 2006) (적용 대상 카운티가 선거 관련 청원서에 대해 스페인어 번역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

123 52 U.S.C. § 10503(e) (“소수 언어” 및 “언어 소수 집단”을 정의)

124 Id. § 10503(c) (“본 섹션의 ... 적용을 받는 주 또는 정치적 하위 단위가 유권자 등록 또는 투표와 관련된 통지, 양식, 지침, 지원, 또는 투표용지를 포함한 선거 절차와 관련된 기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자료를 영어와 더불어 해당 소수 집단의 언어로 제공하여야 한다.... ”); id. § 21041(a) (미국 투표 지원법(Help America Vote Act)) 미국 투표 지원법은 더 나아가 선거 지원 위원회가 “투표 장비, 선거 시스템 및 투표 기술의 품질, 신뢰성, 정확성, 접근성, 경제성 및 보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단체들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신청자들이 자금을 지원받은 연구 및 개발이 “(1965년 투표권법의 요구 사항과 일치하게) 영어가 서툰 개인들을 위한 대안적 언어 접근성을 제공할 필요성을 고려할 것”을 증명하도록 요구합니다. Id. § 21041(a)-(b)(1).

125 52 U.S.C. § 10508; see Arkansas United v. Thurston, 517 F. Supp. 3d 777, 786 (W.D. Ark. 2021) (52 U.S.C. § 10508이 LEP 유권자에게 적용된다고 판시)

126 일반적으로 52 U.S.C. § 10503 참조.

127 Id. § 10503(c); 또한 id. § 10503(b)(3)(A) 참조 (“투표 자료”를 정의)

128 투표권법 개정(Voting Rights Act Amendments) of 2006, Section 203에 따른 결정, 86 Fed. Reg. 69611, 69615 (Dec. 8, 2021).

129 NYVRA는 “소수 언어” 및 “언어 소수 집단”을 “미국 원주민, 아시아계 미국인, 알래스카 원주민 또는 스페인계 혈통을 가진 사람들”로 정의합니다. N.Y. Elec. Law § 17-204(5-a).

130 Id. § 17-208(1)(a).

131 Id. § 17-208(1)(b).

132 Id. § 17-208(2).

133 Boureima v. New York City Hum. Res. Admin., 128 A.D.3d 532, 533 (1st Dep’t 2015) 참조 (뉴욕시 인권법에 따라 “제한적 영어 구사(LEP) 개인에 대한 차별은 출신 국가에 근거한 차별에 해당한다”)

134 N.Y. Exec. Law § 296(2)(c)(i)-(ii) (“장애인이 시설, 특권, 이점 또는 편의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 관행, 절차의 합리적 수정 요청을 거부하는 행위,” 및 “보조 기기와 서비스의 부재로 인해 장애인이 서비스에서 배제되거나 거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행위”를 “ 차별적 관행”에 포함시키되, “그러한 수정이 시설, 특권, 이점 또는 편의 등의 본질을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

135 N.Y. Exec. Law § 296.

136 N.Y. Civ. Rts. Law § 40-c(2).

137 N.Y. Exec. Law § 291(1)-(2) (직업을 구하고, 교육을 받고, 공공 편의 시설을 이용하며, 주거 공간 및 공공 공간을 소유, 사용, 점유할 기회를 "연령, 인종,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 군 복무 상태, 성별, 혼인 여부 또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누리는 것을 시민권으로 인식하고 선언한다고 규정"); id. § 292(9) 참조 ("공공 편의 시설, 휴양 또는 오락 장소"를 정의)

138 N.Y.C. Admin. Code § 8-107 (또한 차별적 영향에 대한 책임도 규정).

139 Buffalo Code § 154-11 참조 (출신 국가 및 장애를 이유로 하는 것을 포함하여 차별을 금지); id. § 154-13 (공정주거법(Fari Housing Law)상 "출신 국가"를 "조상, 출생지, 문화 또는 언어"로 정의); Rochester Code Ch. 63, Art. I (인권(Human Rights)); Albany Code Ch. 48, Art. III (포괄적 인권법(Omnibus Human Rights Law))

140 N.Y. Exec. Law § 202-a(1) 참조. 일반서비스국 산하 언어 접근 사무소 (OLA) (https://ogs.ny.gov/office-language-access)는 기관의 언어 접근법 준수 여부를 감독할 책임을 집니다. Id. § 202-a(6). 법에서 요구하는 언어 접근법에 따른 기관 발전에 대한 OLA의 연례 보고서는 https://ogs.ny.gov/office-language-access-annual-report-2023-2024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id. § 202-a(6) 참조.

141 Id. § 202-a(1).

142 N.Y. Office of Gen. Servs., New York State Language Access Law, Top 12 NYS non-English Languages, https://ogs.ny.gov/new-york-state-language-access-law.

143 N.Y. Exec. Law § 202-a(5).

144 Id. § 202-a(4)(a).

145 Id. §§ 17-204(5-a), 17-208.

146 N.Y. Judiciary Law § 390(1) ("어떠한 성격의 사법 절차에서든 청각장애인 또는 난청인이 당사자, 증인, 배심원 또는 예비 배심원이 되는 경우, 법원은 모든 경우에 자격을 갖춘 통역인을 임명하여 … 해당 청각장애인 또는 난청인에게 절차 내용을 통역해주고 그 사람의 증언을 통역하도록 해야 한다.…"); 22 NYCRR § 217.1(a) ("모든 민사 및 형사 사건에서, 법원이 당사자나 증인, 또는 가정법원 절차에서 미성년 당사자의 이해관계가 있는 부모나 보호자가 영어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재판 절차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 서기나 기타 지정된 행정관은 비용 부담 없이 통역인을 배정하여…전화나 실시간 화상 연결을 통해 통역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N.Y. Civ. Practice Law and Rules (CPLR) 3114 참조 ("심문받을 증인이 영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심문 측은 자신의 비용으로 모든 질문과 답변에 대한 번역을 제공해야 한다. 법원이 질문들을 결정하는 경우, 해당 외국어와 영어로 결정할 수 있다.")

147 N.Y. State Unified Court Sys., Language Access and Court Interpreters, https://ww2.nycourts.gov/COURTINTERPRETER/index.shtml (22 NYCRR § 217 및 N.Y. Judiciary Law § 390를 인용)

148 N.Y. Dom. Rel. Law §§ 240(3)(10)(a-1), 252(1-a); N.Y. Family Court Act § 169 참조.

149 10 NYCRR § 405.7. 또한 요양원이나 기타 보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환자인 경우, 뉴욕주 법은 특정 권리를 보장하며, 여기에는 "충분하고 적절한 의료를 받을 권리, 자신의 의료 상태 및 제안된 치료에 관하여 온전히 고지받을 권리, 그리고 그러한 행위의 결과를 충분히 고지받고 이를 이해한 후 약물 및 치료를 거부할 권리"입니다. N.Y. Pub. Health Law § 2803-c(3)(e). 보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란 "숙소, 식사 및 건강 정보의 기록, 식이 관리 감독, 해당 서비스에 수반되는 감독 하의 위생 서비스 등을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신체적 돌봄을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됩니다." Id. § 2801(4)(b). 보건부는 이러한 시설에 대하여, 환자의 권리를 설명하는 서면 문서를 뉴욕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10개 비영어권 언어로 제공하여야 합니다. Id. § 2803-c(6).

150 10 NYCRR § 405.7; 또한 N.Y. Pub. Health Law § 2803-bb 참조.

151 N.Y. Pub. Health Law § 2803-bb; 10 NYCRR § 405.7.

152 N.Y. Educ. Law § 6829(2)(a); id. § 6829(1)(a) 참조 (동일한 소유권 하에 뉴욕 내 8개 이상의 약국으로 구성된 약국 그룹에 속한 약국을 적용 대상 약국으로 정의); 8 NYCRR § 63.11(b)(1)-(2) (오프라인 약국 및 우편 주문 약국이 처방약에 관하여 LEP 개인에게 상담을 제공할 때, LEP 고객의 약물 프로필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할 때, 그리고 LEP 고객이 처방약 라벨, 경고 라벨 및 기타 서면 자료를 이해하도록 지원할 때, 무엇보다도 무료이면서 적절한 구두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

153 뉴욕 법률에 따라, 고용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률과 그 산정 기준을 명시한 서면 통지를 영어 및 근로자가 자신의 주 언어라고 밝힌 기타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N.Y. Labor Law § 195(1)(a).

154 N.Y. Workers' Comp. Law § 17-a.

155 N.Y. Exec. Law § 296(1)(a); 또한 id. § 296(1-a) 참조 (고용주, 노동조합, 고용 알선 기관 및 견습 훈련 프로그램을 통제하는 기타 기관이, 장애, 인종, 출신 국가, 시민권 또는 이민 신분, 및 기타 보호되는 신분에 근거하여 직업 훈련 및 견습 기회를 제공하는 과정에서의 차별을 금지); N.Y. Civ. Rts. Law § 40-c(2) (장애, 인종, 출신 국가 및 기타 보호되는 신분에 근거한 시민권 차별을 금지); N.Y. Exec. Law § 291(1) ("직업을 구할 기회를 연령, 인종, 신념, 피부색, 출신 국가, 성적 지향, 성 정체성 또는 표현, 군 복무 상태, 성별, 혼인 여부 또는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없이 누리는 것을 시민권으로 인식하고 선언한다.")

156 N.Y. Educ. Law § 3204(2-a)-(4); 8 NYCRR §§ 117.3, 154-2 참조; 또한 8 N.Y.C.R.R. § 154-2.1(a) 참조 (“각 학군은 영어 학습자에게 학군이 제공하는 졸업에 요구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을 포함, 모든 학교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하여 학생의 연령과 학년에 상응하는 수준으로 동등한 접근을 제공하여야 한다.”)

157 e.g., 8 NYCRR § 154-2.3(f) 참조; 또한 id. § 100.2(l)(4) 참조 (특정 학생 징계 절차와 관련하여 ELL 학생 및 그 부모를 위해 통역 및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요구)

158 8 NYCRR § 154-2.1(b) 참조.

159 e.g., N.Y. Exec. Law §§ 291(2), 292(40)(a)-(c), 296(4), 및 300; N.Y. Civil Rts. Law § 40-c 참조.

160 주택담보대출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주택담보대출 기관은 신청자에게 대출 조건에 대한 명확하고 진실된 설명을 받을 권리를 포함한 신청자의 권리를 설명하는 안내 책자를 신청자가 선호하는 언어로 제공해야 합니다. N.Y. Banking Law § 35(1). 주택 소유자에 대하여 압류 절차를 개시하기 최소 90일 전까지, 주택담보대출 기관 및 대출 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주택 소유자가 압류로 인해 주택을 상실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통지를 제공해야 합니다. Real Prop. and Proceedings Action Law § 1304(1). 이러한 통지는 LEP 주택 소유자의 모국어 또는 주택 소유자가 사용하는 언어로 제공되어야 하는데, 해당 언어가 뉴욕주 내 LEP 개인이 가장 널리 사용하는 6개 비영어권 언어 중 하나인 경우에 한합니다. Id. § 1304(5).

161 N.Y. Gen. Bus. Law § 1101(1), (3) (소셜 미디어 회사가 뉴욕주 내 LEP 개인이 가장 널리 사용하는 12개 비영어 언어로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게시하도록 요구)

162 N.Y. Pub. Health Law § 2805-p.

163 N.Y. Gen. Bus. Law § 460-b(1) (“고객이 이민 지원 서비스 제공자와 서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는 어떠한 이민 지원 서비스도 제공되어서는 안 된다. 해당 계약은 고객이 단독으로 또는 이용 가능한 통역인의 도움을 받아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164 In re Nat’l Sec. Agency Telecomms. Records Litig., 633 F. Supp. 2d 892, 908 (N.D. Cal. 2007) 참조 (“행정명령은 그 자체만으로는 주법을 대신하지 않는다.”)

165 U.S. Const. art. I, § 1 (“본 헌법에 의해 부여된 모든 입법권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미국 의회에 속한다.”); U.S. Const. art. II, § 3 (“[대통령은] 법률이 충실히 집행되도록 할 의무를 진다….”)

166 Exec. Order No. 14224, 영어를 미국의 공식 언어로 지정, 90. Fed. Reg. 11363 (Mar. 1, 2025) (Exec. Order No. 13166을 폐지, 영어가 서툰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 접근성 개선, 65 Fed. Reg. 50121 (Aug. 11, 2000))

167 법무장관 Pamela Bondi, Memorandum: Implementation of Executive Order No. 14,224: Designating English as the Official Language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July 14, 2025).

168 현재로서는 행정명령 제14224호가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의 언어 접근에 영향을 미칠지, 그렇다면 어떤 영향이 있을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2025년 7월 14일자 DOJ 각서는 해당 행정명령이 재활법 및 미국 장애인법(ADA)에서 요구하는 장애인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 요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이행되어야 함을 인정하고 있으나, 연방 정부가 이러한 법률을 어떻게 해석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재활법 및 ADA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안내서의 "연방 명령 및 정책" 섹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9 Clinton v. City of New York, 524 U.S. 417, 438 (1998) 참조 ("헌법에는 대통령이 법률을 제정, 개정 또는 폐지할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San Francisco v. Trump, 897 F.3d 1225, 1234 (9th Cir. 2018) ("의회의 입법 권한을 장악하려는" 대통령 행정명령은 권력분립 원칙을 위반한다고 판시); PFLAG, Inc. v. Trump, 766 F. Supp. 3d 535, 561 (D. Md. 2025) (동일한 취지); 또한 Youngstown Sheet & Tube Co. v. Sawyer, 343 U.S. 579, 588 (1952) 참조 (헌법은 의회의 입법권을 대통령의 … 통제에 종속시키지 않았다.") 그에 더하여, 대법원은 최근 "기관의 법규 해석은 기관의 헌법 해석과 마찬가지로 존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Loper Bright Enters. v. Raimondo, 603 U.S. 369, 392 (2024) (원문 강조).

170 ADA에는 고용주, 주 및 지방 정부, 공공에 개방된 사업체, 상업 시설, 교통 제공자, 통신 회사를 대상으로 장애 기반 차별을 금지하는 네 개의 관련 섹션, 즉 "타이틀(title)"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ADA의 Title I은 15명 이상의 직원을 둔 고용주가 장애인에게 고용 관련 기회로부터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42 U.S.C. §§ 12111-12117; e.g., Equal Emp. Opportunity Comm'n v. Drivers Mgmt., LLC, 142 F.4th 1122, 1127, 1130-33 (8th Cir. 2025) 참조 (청각장애가 있고 합리적 편의가 필요한 연수생의 채용을 거부한 운송회사가 ADA를 위반하였음) Title II의 Part A는 주 및 지방 정부가 사회복지, 공교육, 법원, 교통, 레크리에이션, 보건의료, 투표, 응급 서비스, 공공 회의 등을 포함한 프로그램, 서비스 및 활동에서 장애인이 혜택을 볼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42 U.S.C. §§ 12131-12134; e.g., Martinez v. Cuomo, 459 F. Supp. 3d 517, 522 (S.D.N.Y. 2020) 참조 (뉴욕 주지사가 일일 TV 브리핑을 화면 내 ASL 통역사를 두고 실시하지 않은 것이 ADA 및 재활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Title II의 Part B는 공공 교통 시스템에 대해 장애인이 그 서비스로부터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42 U.S.C. §§ 12141-12165; e.g., Segal v. Metro. Council, 29 F.4th 399, 402, 405 (8th Cir. 2022) 참조 (시청각장애인 승객에게 버스 노선 안내를 하지 않은 교통 기관의 ADA 및 재활법 위반 여부와 관련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시) Title III는 식당, 소매점, 호텔, 영화관, 사립학교, 의원, 병원, 보육시설, 민간 교통 운영자 등을 포함한 공중 대상 비영리단체 및 사업체에 그들이 제공하는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이용 기회를 장애인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합니다. 42 U.S.C. §§ 12181-12189; e.g., Panarra v. HTC Corp., 598 F. Supp. 3d 73, 79 (W.D.N.Y. 2022) 참조 (자막을 제공하지 않은 기술회사를 상대로 한 청각장애인 원고의 ADA에 따른 청구 인정); Puerner v. Hudson Spine and Pain Med. P.C., No. 17-CV-03590 (ALC), 2018 WL 4103491 (S.D.N.Y. Aug. 28, 2018) (ASL 통역을 제공하지 않은 의료기관의 행위가 ADA 위반에 해당) 마지막으로 ADA Title IV는 통신 회사에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 사용자가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47 U.S.C. § 225.

171 1973년 재활법 섹션 504는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수혜자 및 연방 행정기관이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을 포함한 장애인을 위해 언어 접근 편의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29 U.S.C. § 794(a); e.g., Liese v. Indian River Cnty. Hosp. Dist., 701 F.3d 334, 344 (11th Cir. 2012) 참조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에게 필요한 보조 기기를 제공하지 않은 병원의 행위가 재활법 위반에 해당할 것이다; Rothschild v. Grottenthaler, 907 F.2d 286, 288, 293 (2d Cir. 1990) (재활법은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공립학교가 학교 주관 활동에서 학군이 비용을 부담하여 정상 청력 학생의 청각장애인 부모에게 수어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요구합니다)

1964 민권법 Title Vi의 섹션 601, 42 U.S.C. § 2000d는 연방 재정 지원 수혜자의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며, 이는 LEP 개인에 대해서도 유사한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습니다. Lau v. Nichols, 414 U.S. 563, 568 (1974) 참조. 대법원은 차별적 영향에 근거한 관행에 이의를 제기할 때 DOJ 이외의 기관이 Title VI를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제한하였습니다. Alexander v. Sandoval, 532 U.S. 275, 280, 286, 293 (2001) 참조. 그러나 법원들은 여전히 언어 기반 차별에 Title VI를 적용해 왔습니다. T.R. v. Sch. Dist. of Phila., 223 F. Supp. 3d 321, 335 (E.D. Pa. 2016) 참조 (“다수의 연방법원이 언어 기반 차별이 Title VI가 금지하는 출신 국가 차별의 한 형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왔다.”) (관련 판례들 인용); United States v. Maricopa Cnty., Ariz., 915 F. Supp. 2d 1073, 1079 (D. Ariz. 2012) (“오랜 판례, 연방 규정 및 해당 규정에 대한 기관 해석은 언어 기반 차별이 Title VI상 출신 국가 차별에 해당함을 인정한다.”)

172 이 안내서는 학생을 지칭할 때 “영어가 서투른 사람(limited English proficient)” 대신 “영어 학습자(English language learner)”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EEOA는 “개인의 … 출신 국가를 이유로 평등한 교육 기회”를 박탈하는 것을 금지하며, 여기에는 “수업 프로그램에 대한 학생의 동등한 참여를 방해하는 언어 장벽 극복을 위해 교육 기관이 적절히 조치”하지 않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20 U.S.C. § 1703(f); Issa v. Sch. Dist. of Lancaster, 847 F.3d 121, 140 참조 (3d Cir. 2017) (ELL 학생들에게 열등한 교육을 제공한 학군을 상대로 한 EEOA 청구에서 ELL 학생들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음); Methelus v. Sch. Bd. of Collier Cnty., Fla., 243 F. Supp. 3d 1266, 1277 (M.D. Fla. 2017) (학군이 ELL 학생의 공립학교 등록을 거부하고 무학점 성인 프로그램으로 이관했다는 혐의는 EEOA에 따른 청구 사유); New York by Schneiderman v. Utica City Sch. Dist., 177 F. Supp. 3d 739, 753 (N.D.N.Y. 2016) (학군이 ELL 학생들을 열등한 대체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환시켰다는 혐의는 EEOA에 따른 청구 사유); T.R. v. Sch. Dist. of Philadelphia, 223 F. Supp. 3d 321, 335 (E.D. Pa. 2016) (장애인 ELL 학생들에게 충분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혐의는 EEOA에 따른 청구 사유)

173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 20 U.S.C. §§ 1400, 1412(a)(1)(A); Endrew F. ex rel. Joseph F. v. Douglas Cnty. Sch. Dist. RE-1, 580 U.S. 386, 402-03 (2017) (IDEA는 “아동의 개별적 상황에 비추어 적절한 진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산정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다.”) IDEA의 주요 언어 접근 보호는 청각장애인 및 난청인 학생과 관련되지만, ELL 학생과 부모에 대한 언어 접근에 대해서도

다릅니다. 예를 들어, IDEA는 주가 장애 아동을 위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보조금을 받는 자격을 "주에서 시행 중인 정책 및 절차를 통해" 특히 "장애 아동의 서비스 평가 및 배정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검사 및 평가 자료와 절차가...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가 아닌 한 해당 아동의 모국어 또는 의사소통 방식으로 제공 및 시행됨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계획서" 제출을 기준으로 규정합니다. 20 U.S.C. § 1412(a)(6)(B). 또한 IDEA는 다양한 보호 중에서도, 부모에게 모국어로 통지할 것을 요구하는 여러 절차적 보호 장치를 포함합니다. Id. §§ 1415(B)(4), 1439(a)(7).

174 예를 들어, 1965년의 초중등교육법(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을 재승인한 모든학생성공법(Every Student Succeeds Act)은 언어 접근과 관련된 다수의 규정을 포함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1) 전반적인 학업 개선, 20 U.S.C. §§ 6301-6578 참조, (2) ELL 및 이민 학생을 위한 언어 교육, id. §§ 6801-7014 참조, (3) 비영어 언어를 사용하는 원주민 학생 교육, id. §§ 7401-7546 참조, 등이 포함됩니다. 또한 id. § 3420 참조 (교육부 내 영어 언어 습득 사무국(Office of English Language Acquisition)을 설치하고, 국장이 "교육부의 이중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행정을 조정"하도록 요구)

175 52 U.S.C. §§ 10301, 10303(f)(2) (시민이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언어 소수 집단"의 구성원이라는 이유로 투표권이 부인되거나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관행 및 절차를 금지) 해당 주 또는 정치적 하위 단위의 경우, 모든 투표용지와 투표 관련 자료는 해당 요건을 충족하는 언어 소수 집단의 언어로 제공되어야 합니다. Id. § 10503; OCA-Greater Houston v. Texas, 867 F.3d 604, 615 (5th Cir. 2017) 참조 (LEP 유권자에 대한 통역 지원을 제한한 텍사스의 투표법이 투표권법을 위반했다고 판시); In re Cnty. of Monterey Initiative Matter, 427 F. Supp. 2d 958, 964 (N.D. Cal. 2006) (적용 대상 카운티가 선거 관련 청원서에 대해 스페인어 번역을 제공해야 한다고 요구)

176 52 U.S.C. § 10310(c)(3) ("'소수 언어' 또는 '언어 소수 집단'이라는 용어는 미국 원주민, 아시아계 미국인, 알래스카 원주민 또는 스페인계 혈통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한다.")

177 Id. § 10508 ("실명, 장애 또는 읽기나 쓰기 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투표에 도움이 필요한 유권자는 고용주나 고용주의 대리인, 노동조합의 임원 또는 대리인을 제외한 자신이 선택한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Arkansas United v. Thurston, 517 F. Supp. 3d 777, 786 (W.D. Ark. 2021) 참조 (52 U.S.C. § 10508이 LEP 유권자에 적용된다고 판시)

178 42 U.S.C. § 18116(a) ("세액공제, 보조금 또는 보험 계약을 포함, 연방 재정 지원을 일부라도 받는 모든 보건 프로그램 또는 활동, 또는 행정부 기관이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 또는 활동 하에서 어떠한 개인도 참여에서 배제되거나, 혜택이 거부되거나, 차별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Saldana v. Cook Cnty. Health & Hosps. Sys., No. 19 CV 6178, 2024 WL 4792113, at *9-10 (N.D. Ill. Jan. 5, 2024) 참조 (치료 과정에서 청각장애인 환자에게 대면 통역인을 제공

하지 않음으로 병원이 ACA를 위반하였다는 결론을 "뒷받침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

179 언어 기반 차별이 출신 국가 차별 또는 인종과 같은 다른 보호 대상 특성에 따른 차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관계와 적용 법률에 따라 달라지며, 당연시될 수 없습니다. 언어 기반 차별이 출신 국가 또는 인종 차별의 대리적 형태일 수 있음을 특정 언어 접근 거부의 사실 관계와 정황이 시사하는 경우, 법원은 두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이 적용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Hernandez v. New York, 500 U.S. 352, 354 (1991) 참조 ("특정 민족 집단과 일부 공동체의 경우, 특정 언어에 대한 숙련도는 피부색과 마찬가지로 평등 보호 분석상 인종의 대리 지표로 취급되어야 할 수 있다."); Desrosiers v. Summit Sec. Servs., Inc., No. 21-CV-10941 (JPO), 2022 WL 13808524, at *4 (S.D.N.Y. Oct. 21, 2022) ("언어 차별에 대한 증거는, 보다 직접적으로 차별을 입증하는 증거가 수반되는 경우 등에서, 배심원이 출신 국가 또는 인종 차별을 인정하도록 할 수 있다." (요약); CNY Fair Hous., Inc. v. Swiss Vill., LLC, No. 521CV1217MADML, 2022 WL 2643573, at *7 (N.D.N.Y. July 8, 2022) (언어 기반 차별이 일부 상황에서는 인종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판례들을 인용); Equal Emp. Opportunity Comm'n v. Wisconsin Plastics, Inc., 186 F. Supp. 3d 945, 948 (E.D. Wis. 2016) ("언어 능력 자체가 인종이나 출신 국가와 같은 보호 계층과 법적으로 동일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언어는 때때로 보호 계층에 대한 차별의 대리 지표 또는 위장 수단으로 기능할 수 있다."); Rivera v. NIBCO, 701 F. Supp. 2d 1135, 1141 (E.D. Cal. 2010) ("언어 기반 차별은 종종 출신 국가 차별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본 안내서는 출신 국가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전반적으로 언급하고 있으나, 독자는 특정 법률이 언어 접근 보호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례별로 자체적인 법적 분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180 29 U.S.C. § 794(a)-(b); Basta v. Novant Health Inc., 56 F.4th 307, 318 (4th Cir. 2022) 참조 (아내가 아이를 출산하는 동안 청각장애인 남편이 아내의 의료 대리인 역할을 할 때, ASL 통역인 제공을 거부하고 비효율적인 보조 장치를 제공한 병원에 대해 재활법 청구를 제기)

181 42 U.S.C. §§ 12132, 12182; Loeffler v. Staten Island Univ. Hosp., 582 F.3d 268, 275-75 참조 (2d Cir. 2009, 청각장애인 환자와 그 아내에게 ASL 통역인을 제공하지 않고 자녀가 통역하도록 강요한 병원의 행위가 재활법 및 기타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에 대해 중대한 사실상의 쟁점을 발견)

182 42 U.S.C. §§ 3604-06 (주택의 매매 또는 임대, 주거용 부동산 관련 거래, 중개 서비스의 제공 시, 출신 국가 및 장애 등 보호 대상 특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 see CNY Fair Hous., Inc. v. Swiss Vill., LLC, No. 521CV1217MADML, 2022 WL 2643573, at *6-8 (N.D.N.Y. July 8, 2022) (출신 국가 차별의 대리 수단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가구 내에 영어 사용자가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정책에 대하여 원고는 주택 제공자를 상대로 FHA 청구를 신청); Fair Hous. Just. Ctr., v. Allure Rehab. Servs. LLC, No. 15 CV 6336, 2017 WL 4297237, at *5-6 (E.D.N.Y. Sept. 26, 2017) (청각장애인 거주자에게 ASL 통역인을 제공하지 않은 요양원 및 보조 생활 시설을 상대로 한 원고의 FHA 청구가 성립); Cabrera v. Alvarez, 977 F. Supp. 2d 969, 977 (N.D. Cal. 2013) (직원이 통역인 제공 요청을 거부하고 서투른 영어에 대해 적대적인 발언을 하여, 스페인어를 사용하는 원고들이 주택 당국을 상대로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FHA 청구를 제기)

183 재향군인부(VA)에서 특정 의료 시설이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된 상당수의 재향군인을" 진료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VA는 "그 시설에서 해당 재향군인에게 가장 적합한 언어와 영어에 모두 능통한 충분한 수의 직원을 파악하고, 이들의 책임에 문화적 민감성에 관한 지도 및 언어 및 문화적 차이를 해소하는 역

할을 포함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 및 이행하여야 한다." 38 U.S.C. § 8110(b). "자격을 갖춘 재향군인 및 자격을 갖춘 부양가족 중 상당수가 영어가 아닌 언어를 주 언어로 사용하는 지역"에서는, VA가 가능한 최대한의 범위 내에서 해당 재향군인들에게 "그들의 주 언어로" 아웃리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Id. § 6303(a).

184 42 U.S.C. § 12112(a) ("어떠한 적용 대상 단체도 장애를 이유로 자격을 갖춘 개인에 대하여 구직 절차, 채용, 승진, 해고, 보상, 직업 훈련 및 기타 고용 약관, 조건 및 특권과 관련하여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 Searls v. Johns Hopkins Hosp., 158 F. Supp. 3d 427, 430, 437 (D. Md. 2016) 참조 (청각장애 간호사가 합리적 편의에 해당하는 전일제 ASL 통역인을 요청한 후, 병원 측이 해당 간호사의 채용 제안을 철회함으로써 ADA 및 재활법을 위반하였다)

185 예를 들어, 고용기회균등법(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ct)은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고용 차별을 광범위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42 U.S.C. § 2000e-2(a) (불법적인 고용 관행의 정의로서, 인종, 피부색, 종교, 성별 또는 출신 국가를 이유로 개인의 고용 약관, 조건, 보상 또는 특권과 관련하여 채용을 거부하거나 해고하거나 기타 방식으로 차별하는 행위, 또는 개인의 고용 기회를 박탈하거나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도록 직원이나 구직자를 제한, 분리 또는 분류하는 행위를 포함) 1968년 종합 범죄통제 및 안전한 거리법(SSA) 은 "어느 주의 어떤 사람이든 인종, 피부색, 종교, 출신 국가 또는 성별을 이유로 본 장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 자금이 제공되는 프로그램이나 활동과 관련하여 참여에서 배제되거나, 혜택이 거부되거나, 차별을 받거나, 고용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34 U.S.C. § 10228(c). SSA에 따른 민사 소송은 행정적 구제 절차를 소진한 개인에 의해 제기될 수 있습니다. id. § 10228(c)(4)(A)-(B), 또한 적어도 하나의 법원에서 SSA가 언어 접근 관련 청구에 적용된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Ling v. State, 288 Ga. 299, 302 (2010) 참조. 인력혁신 및 기회법(WIOA)은 본 법에 따라 출신 국가, 인종, 피부색, 장애, 연령 또는 성별을 이유로 어느 개인도 자금을 지원받는 어떠한 프로그램이나 활동의 "운영 또는 그와 관련하여 참여에서 배제되거나, 혜택이 거부되거나, 차별을 받거나, 고용이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9 U.S.C. § 3248(a)(1)-(2). 단, WIOA는 Title VI과 관련하여 출신 국가 차별을 정의하고 있으며, WIOA에는 사적 소송 제기권이 존재하지 않고, 미국 노동부 장관 및 법무장관에 의해 집행됩니다. Guida v. W. Virginia Dep't of Com., No. 5:23-CV-359, 2024 WL 2870853, at *3 (N.D. W. Va. May 29, 2024); Owens v. Freedom Roads Holding Co. LLC, No. CV-17-1117-PHX-JZB, 2017 WL 11714023, at *6 (D. Ariz. July 19, 2017).

186 e.g., 15 U.S.C. § 9513(a)(1)(C) 참조 (상무부 소수민족 기업 개발(Commerce for Minority Business Development) 담당 차관이 "영어가 서투른 개인이 [소수민족 기업 개발]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및 정보에 문화적 및 언어적으로 적절히 접근할 수 있도록, 미국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최소 5개 언어로 아웃리치, 교육 서비스 및 기술 지원을 제공하도록" 요구); 42 U.S.C. § 12651d(b)(19) (AmeriCorp의 최고경영자의 직무에 "가능한 경우, 국가 서비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자 하는 영어가 서툰 개인을 위하여 영어 외의 언어로 신청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도록 규정)

187 법원 통역인법은 당사자나 증인이 "영어 외의 언어만 사용하거나 이를 주로 사용"하거나, "청각장애로 인해 … 당사자의 절차 이해 또는 변호인이나 수석법관과의 의사소통에 제약이 있거나, 증인의 질문 이해 및 증언 제출에 제약이 있는" 경우, 통역인을 요구합니다. 28 U.S.C. § 1827(d)(1). "재판 절차에 대한 적절한

번역의 일반적 기준은, 영어에 능통한 피고인이라면 청취할 수 있는 재판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지속적인 단어 대 단어 번역으로 제공되는 것을 요구한다." United States v. Joshi, 896 F.2d 1303, 1309 (11th Cir. 1990). 연방민사소송규칙 43(d)는 증인의 증언을 받을 때 "법원이 직접 선택한 통역인을 임명하고, 법에 따라 제공되는 자금 또는 하나 이상의 당사자가 부담할 합리적인 보수를 정하며, 그 보수를 소송비용으로 과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88 28 U.S.C. § 1827(d)(1).

189 7 U.S.C. § 2020(e)(1)(B).

190 42 U.S.C. § 5151(a). 이 조항은 연방 재난 대응 활동을 규율하는 스태퍼드법(Stafford Act)의 특정 규정으로서, 연방재난관리청(FEMA)에 적극적 의무를 부과하며, 대규모 재난 또는 비상사태 이후 차별을 당한 개인에게 FEMA를 상대로 한 사적 소송 제기권을 부여합니다. Laday v. Ramada Plaza Hotel LaGuardia, No. 07-CV-0450, 2007 WL 526613, at *2 (E.D.N.Y. Feb. 13, 2007). FEMA가 지원 신청자를 차별하였음을 입증할 책임은 FEMA의 조치에 다툼을 제기하는 개인에게 있습니다. Id.

191 42 U.S.C. § 5151(a).

192 Id. § 5196f(a).

193 Id.

194 6 U.S.C. § 321o(b)(3).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로 직접 전송되는 긴급 경보인 무선 긴급 경보(Wireless Emergency Alerts)를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8년 11월부터 FCC는 이동통신사가 스페인어 무선 긴급 경보를 지원하도록 요구해 왔습니다. 47 C.F.R. § 10.480. 뉴욕주 법무장관 Letitia James가 주도한 수년간의 옹호 활동과 2025년 11월 다주 연합의 요구 서한 이후, FCC는 2028년 6월 12일까지 이동통신사가 영어, ASL 및 기타 13개 언어로 무선 긴급 경보를 지원하도록 요구하는 규칙을 공표하였습니다. FCC, Wireless Emergency Alerts and the Emergency Alert System Rule, 91 Fed. Reg. 2317-2318 (Jan. 20, 2026) (to be codified at 47 C.F.R. pt. 10); 또한 OAG, Att'y Gen. James Celebrates Expansion of Multilingual Emergency Alerts, Jan. 21, 2026 참조, https://ag.ny.gov/press-release/2026/attorney-general-james-celebrates-expansion-multilingual-emergency-alerts. 해당 규칙에 따라 이동통신사는 아랍어, 중국어(간체 및 번체), 프랑스어, 독일어, 아이티 크레올어, 힌디어, 이탈리아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타갈로그어, 베트남어, 그리고 ASL 및 영어로 무선 긴급 경보를 지원해야 합니다.

195 42 U.S.C. §§ 12132, 12141(2), 12181(1), 12182.

196 id. § 12141(2) 참조; Lopez v. Jet Blue Airways, 662 F.3d 593, (2d Cir. 2011) (항공기 운송은 법률상 대중교통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항공사를 상대로 한 ADA 청구를 각하)

197 49 U.S.C. § 41705(a). 여러 항소법원과 마찬가지로, 제2순회항소법원은 항공운송접근법(ACAA)이 피해를 입은 승객에게 사적 소송 제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Lopez, 662 F.3d 597쪽 참조. 대신, 피해를 입은 승객은 미국 교통부(DOT)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교통부는 일반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조사를 수행하여야 합니다. Id.; 49 U.S.C. § 46101(a)(1). DOT가 ACAA의 차별 금지 요건을 집행할지는 현행 연방 행정부의 성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CAA를 집행하기 위한 사적 소송 제기권은 존재하지 않지만, 피해를 입은 승객은 DOT의 행정 결정이 내려진 이후 제한적인 범위에서 법원에 구제를 구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합니다. 49 U.S.C. § 46110(a) (DOT가 발

행한 명령에 대하여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은 미국 D.C. 순회항소법원 또는 거주지 관할 순회항소법원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 개인이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법원들은 일반적으로 Article III상의 원고 적격 요건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Illinois Dept. of Transp. v. Hinson, 122 F.3d 370, 371-72 (7th Cir. 1997) 참조 (§ 46110(a) 하의 중대한 이해관계를 “손해로부터 보호받을 이익으로 정의하면서, 여기서 ‘손해’란 (1) 실질적이고, 이상적으로 측정 가능한 피해, (2) 소송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예방, 완화, 치유될 가능성이 있는 것, (3) 구체적이고 개별적이며 비이념적인, 즉 중대한 이익을 의미한다”고 판시); Competitive Enter. Inst. v. U.S. Dept. of Transp., 863 F.3d 911, 914 (D.C. Cir. 2017) (전자담배 이용자인 원고가 항공기 내 전자담배 사용을 금지한 DOT 규칙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할 원고적격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Article III 원고적격 관련 판례 법리를 원용)

플라이 아메리카법(Fly America Act) 역시 국내 및 국제 항공사가 여러 보호 대상 특성 중 출신 국가를 이유로 하는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49 U.S.C. § 40127(a)-(b). 위에서 논의한 ACAA와 마찬가지로, FAA의 차별 금지 조항에는 “사적 소송 제기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 문제에 직면한 대부분의 연방법원이 결론지어 왔습니다.” Shebley v. United Cont’l Holdings, Inc., 357 F. Supp. 3d 684, 690 (N.D. Ill. 2019); Shin v. Am. Airlines Grp., Inc., No. 17-CV-2234-ARR-JO, 2017 WL 3316129, at *2 (E.D.N.Y. Aug. 3, 2017), aff’d sub nom. Shin v. Am. Airline, Inc., 726 F. App’x 89 (2d Cir. 2018) 참조; James v. Am. Airlines, Inc., 247 F. Supp. 3d 297, 307 (E.D.N.Y.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법원은 최소한 그와 다른 가능성을 시사하였습니다.” Shebley, 357 F. Supp. 3d at 690-91 (citing Qayyum v. U.S. Airways, Inc., No. 3:08-0996, 2008 WL 4879401, at *1 n.1 (S.D. W. Va. Nov. 12, 2008); Williams v. Midwest Airlines, Inc., 321 F. Supp. 2d 993, 996 (E.D. Wis. 2004); Alasady v. Nw. Airlines Corp., No. Civ. 02-3669(RHK/AJB), 2003 WL 1565944, at *10 n.13 (D. Minn. Mar. 3, 2003)).

198 e.g., 7 U.S.C. § 136a(f)(5) 참조 (살충제 제품 라벨의 안전 및 보건 관련 정보가 스페인어로 번역되도록 요구); 42 U.S.C. § 3020e-1(h) (고령화 담당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for Aging)에게 “연금 및 기타 퇴직급여, 그리고 해당 급여와 관련된 권리에 관하여 아웃리치, 정보 제공, 상담, 연계 및 기타 지원”을 제공받고자 하는 LEP 개인에 정보를 제공하는 전국 단위 전화 핫라인을 설치 및 운영하도록 요구)

NEW YORK STATE ATTORNEY GENERAL

# 뉴욕의 언어 접근
# (Language access in New York)

**헬프라인:**
**1-800-771-7755**

**청각장애인 또는 난청인:**
**1-800-788-9898**

본 문서의 ASL 동영상은 다음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ag.ny.gov/language-access**